힐스테이트 구미더퍼스트 입주자 모집공고

첞약 Horie



단지 주요정보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구미시 거주자		#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현 매제한 거주의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없음		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4.07.12.(금)	24.07.22.(월)	24.07.23.(화)	24.07.24.(수)	24.07.31.(수)	24.08.02.(금)~24.08.10.(토)	24.08.12(월)~24.08.14.(수)

공통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상세한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담전화☆ 054-453-1011)을 운영할 계획이나 간혹 폭주하는 전화 상담 신청으로 인하여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상담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로 인해 청약관련 시항에 대해 착오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청약과 관련된 전화 상담은 청약 신청 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 신청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서류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 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 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일반공급				
현장시작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7	내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급 충족	1순위(6 7	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 적용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 1수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 2순위: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 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 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m'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제1호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 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 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국글중합/글린중합 구군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 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hillstate.co.kr/s/gumi)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

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 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위장전입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제65조 및 「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 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0	0	0	0	0	0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후재공급	0	0	X	X	X	X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단지 유의사항

Π.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2024.07.12.(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구미시에 거주하거나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구미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4.07.22.(월)	24.07.23.(화)	24.07.24.(수)	24.07.31.(수)	24.08.02.(금)~24.08.10.(토)	24.08.12.(월)~24.08.14.(수)
맛뗩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 (PC·모바일) 청약홈	■ 견본주택 (경상북도 구미시 원평동 1071-8)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화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없음	없음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 주택과 -1568호(2024.07.11)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동 59-1번지 일원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9층, 5개동 총 491세대

[특별공급 200세대(기관추천 37세대, 다자녀가구 49세대, 신혼부부 67세대, 노부모부양 14세대, 생애최초 33세대) 포함[및 부대복리시설

- 주차대수와 주차장(주차통로 높이 / 주차면 높이): 713대 / 지하1층(주차 출입구 2.7m 이상/주차면 2.1m이상), 지하2층(주차 출입구 2.3m/주차면 2.1m이상)
- 내진설계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며, 동 기준에 의한 내진 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 VII-0.216a
- 입주예정일 : 2027년 04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Ш.

(단위 : m², 세대)

		조대형	OFAL			세대별 계약	면적		UICIIEB	총공급	* 고 · 특별공급							최하층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		네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합계	세대별 대지지분	세대수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계	일반공급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지하주차장등)				. 12 1 2	1.1 1.11			0 11-1-	"		
	01	84.8000A	84A	84.8000	24.2747	109.0747	53.5571	162.6318	40.2594	264	26	27	47	5	23	128	136	10
	02	84.9800B	84B	84.9800	25.0999	110.0799	53.6708	163.7507	40.3448	112	11	11	20	4	10	56	56	4
2024000304	03	114.8700	114	114.8700	32.0586	146.9286	72.5484	219.4770	54.5353	108	-	11	-	5	-	16	92	4
	04	132.9200	132	132.9200	40.8345	173.7545	83.9483	257.7028	63.1047	5	-	-	-	-	-	-	5	-
	05	162.9800	162	162.9800	50.4364	213.4164	102.9332	316.3496	77.3759	2	-	-	-	-	-	-	2	-
					합계					491	37	49	67	14	33	200	291	18

	구분	84A	84B	114	132	162	합계
	국가유공자	4	3	0	0	0	7
	장기복무 제대군인	4	2	0	0	0	6
기관추천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6	2	0	0	0	8
특별공급 중소기업 근로자		6	2	0	0	0	8
	장애인	6	2	0	0	0	8
	소계	26	11	0	0	0	37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1	11	0	0	49
	신혼부부 특별공급		20	0	0	0	67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4	5	0	0	14
	생애최초 특별공급	23	10	0	0	0	33
	합계	128	56	16	0	0	200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세대)

						777	LOH		게야크(트)()			X	1(00()		`	근 다 . 편, 시네)
01.11						공급금	i액		계약금(5%)			중노급	∄(60%)			잔금35%
약식 표기	공급 세대수	동호 (라인별)	층구분	해당 세대수	대지비	건축비	부가가치세	계	계약시 납입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2 63370
					-11-11-1	E 7 -1	1 - 1 - 1 - 1 - 1	· 11		2024.12.15	2025.04.15	2025.09.15	2026.02.15	2026.06.15	2026.11.15	입주지정일
			1층	4	125,159,000	361,841,000	-	487,000,000	24,35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170,450,000
			2층	4	126,958,000	367,042,000	-	494,000,000	24,700,000	49,400,000	49,400,000	49,400,000	49,400,000	49,400,000	49,400,000	172,900,000
		103동 (3,4호) 105동 (5,6호)	3~4층	8	128,500,000	371,500,000	-	500,000,000	25,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175,000,000
			5~9층	20	129,785,000	375,215,000	-	505,000,000	25,250,000	50,500,000	50,500,000	50,500,000	50,500,000	50,500,000	50,500,000	176,750,000
944	84A 264	10층 이상	70	131,070,000	378,930,000	-	510,000,000	25,5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178,500,000	
04A			1층	5	124,645,000	360,355,000	-	485,000,000	24,250,000	48,500,000	48,500,000	48,500,000	48,500,000	48,500,000	48,500,000	169,750,000
		2층	5	126,444,000	365,556,000	-	492,000,000	24,6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172,200,000	
		104동 (1,2,3,4호) 105동 (1,2호)	3~4층	12	127,986,000	370,014,000	-	498,000,000	24,900,000	49,800,000	49,800,000	49,800,000	49,800,000	49,800,000	49,800,000	174,300,000
			5~9층	30	129,271,000	373,729,000	-	503,000,000	25,150,000	50,300,000	50,300,000	50,300,000	50,300,000	50,300,000	50,300,000	176,050,000
			10층 이상	106	130,556,000	377,444,000	-	508,000,000	25,400,000	50,800,000	50,800,000	50,800,000	50,800,000	50,800,000	50,800,000	177,800,000
			1층	3	123,874,000	358,126,000	-	482,000,000	24,100,000	48,200,000	48,200,000	48,200,000	48,200,000	48,200,000	48,200,000	168,700,000
			2층	3	125,673,000	363,327,000	-	489,000,000	24,450,000	48,900,000	48,900,000	48,900,000	48,900,000	48,900,000	48,900,000	171,150,000
84B	84B 112	103동 (1,2호) 105동 (3,4호)	3~4층	8	127,215,000	367,785,000	-	495,000,000	24,750,000	49,500,000	49,500,000	49,500,000	49,500,000	49,500,000	49,500,000	173,250,000
			5~9층	20	128,500,000	371,500,000	-	500,000,000	25,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175,000,000
			10층 이상	78	129,785,000	375,215,000	-	505,000,000	25,250,000	50,500,000	50,500,000	50,500,000	50,500,000	50,500,000	50,500,000	176,750,000

			1층	4	159,279,600	461,564,000	46,156,400	667,000,000	33,350,000	66,700,000	66,700,000	66,700,000	66,700,000	66,700,000	66,700,000	233,450,000
			2층	4	161,428,800	467,792,000	46,779,200	676,000,000	33,800,000	67,600,000	67,600,000	67,600,000	67,600,000	67,600,000	67,600,000	236,600,000
114	108	101동 (1,2호)	3~4층	8	163,578,000	474,020,000	47,402,000	685,000,000	34,250,000	68,500,000	68,500,000	68,500,000	68,500,000	68,500,000	68,500,000	239,750,000
		102동 (1,2호)	5~9층	20	165,249,600	478,864,000	47,886,400	692,000,000	34,600,000	69,200,000	69,200,000	69,200,000	69,200,000	69,200,000	69,200,000	242,200,000
			10층 이상	72	166,682,400	483,016,000	48,301,600	698,000,000	34,900,000	69,800,000	69,800,000	69,800,000	69,800,000	69,800,000	69,800,000	244,300,000
			26층	1	273,426,000	792,340,000	79,234,000	1,145,000,000	57,250,000	114,500,000	114,500,000	114,500,000	114,500,000	114,500,000	114,500,000	400,750,000
		103동 (3호) 104동 (1,3호)	28층	2	273,426,000	792,340,000	79,234,000	1,145,000,000	57,250,000	114,500,000	114,500,000	114,500,000	114,500,000	114,500,000	114,500,000	400,750,000
132	5	105동 (1호)	27층	1	273,426,000	792,340,000	79,234,000	1,145,000,000	57,250,000	114,500,000	114,500,000	114,500,000	114,500,000	114,500,000	114,500,000	400,750,000
		1038 (31)	29층	1	273,426,000	792,340,000	79,234,000	1,145,000,000	57,250,000	114,500,000	114,500,000	114,500,000	114,500,000	114,500,000	114,500,000	400,750,000
162	2	101동 (1호)	29층	1	336,469,200	975,028,000	97,502,800	1,409,000,000	70,450,000	140,900,000	140,900,000	140,900,000	140,900,000	140,900,000	140,900,000	493,150,000
102	2	102동 (1호)	27층	1	336,469,200	975,028,000	97,502,800	1,409,000,000	70,450,000	140,900,000	140,900,000	140,900,000	140,900,000	140,900,000	140,900,000	493,150,000

※ 상기공급금액은 인지세, 취득세,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및 그 외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며,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연대하여 균등하게 납부하여야 하며 그 외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서 상기 공급금액은 사업주체 자체기준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며,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 분양금액의 항목별 고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 분양사무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홍보제작물 등에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상이하게 표현될 수 있으니,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를 위해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입주자모집공고상(청약시 주택형)	F자모집공고상(청약시 주택형) 84.8000A		114.8700	132.9200	162.9800
약식표기 주택형	84A	84B	114	132	162

-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 홍보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착오가 없도록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 면적합산 시 소수점 5자리 이하에 대해 버림 값이 적용되어 합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받으며 동호수는 무작위 추첨으로 배정합니다.

■ 공통사항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할 수 없으니 청약 및 계약 전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선택품목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추가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단,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별도 안내 예정임)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실, 복도, 주현관, 세대벽체면적 등의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을 기준으로 배분하였으며, 향후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 정리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공급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입니다(필로티 있는 동은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로,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입주지정일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 15일 이내에 납부 해야 하며, 15일 이후에는 미납한 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 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사업주체가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분양자)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자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자금은 실입주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연체료 납부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바랍니다.)
-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 본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제세공과금은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인지 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고 소인처리 합니다.)
- 「인지세법」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 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발코니확장 계약, 전매 포함) 체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서에 기재된 실제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 전자수입인지(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계약서 체결과 관련한 인지세는 계약체결 시 계약자 및 사업주체가 연대하여 균등하게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또는 취급금융기관(우체국, 은행)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 (☎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액(기재금액 기준)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 초과 35만원
-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하는 경우(계약금 완납 시 대출 실행 가능)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체결 후 지정된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별도의 중도금대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행위탁자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대출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약(특별공급,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고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합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모든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분양 대금 중 선납한 금액 및 지정된 계약금 계좌 외에 타 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주택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고, 별도의 이자나 할인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 조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로만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습니다.

IV. 특별공급

구분	내용
공급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3	E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 이 빠른 당첨건은 유	효하며, 당첨자발표일 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3812-212211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I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청약자격 요건	① 청약예금: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전용면적 85m² 이하	(구미시 및 경상북도 200만원	E) (대구광역시) 25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m² 이하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m² 이하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 다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발함				
		약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을 토대로 우선 입주자	포함)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등 검수 결과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 약 신청'으로 변경됨.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세대 발생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는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세대수의 500%를 선정하며 각 특별공급 주택형별로 낙첨자 중 추첨을 통해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신청자수가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 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IV-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37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추천기관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 장애인 :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처 대구지방보훈청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있습니다.

IV-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49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구미시에 거주하거나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8억~8 기업기는 6개월 84(시작을 단적을 해석음적 학생)는 단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구미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거주자) ■ ②배점					
당첨자 선정방법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기준	점수	비고	
L 200 H	<u></u> – – – – – – – – – – – – – – – – – – –	100	· <u>-</u>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3명 2명	40 35 2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이상	15	
영유아 자녀수(2)	15	2명	10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1명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겨
세대구성(3)	5	2/1111 /19	,	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 1 3(3)		한부모 가족	5	- 청약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5
	20	102 48	20	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무주택기간(4)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긴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경상북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지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1년 이상 ~ 5년 미만	5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사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급구시시국기합기신(0)	Э	10년 이상		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내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 IV-3.

구분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 세대수의 18% 범위 : 67세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구미시에 거주하거나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 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 ■ ①소득구분	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	성년 자녀수 → ⑤추첨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당첨자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선정방법	3단계	우선공급(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구미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②순위

순위	પાંક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

■ ③지역: 해당지역 거주자(구미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거주자)

■ 자녀기준

- 자녀는「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 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4.07.12.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비	고
-1	_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エコー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004,509원	~8,248,467원	~8,775,071원	~9,563,282원	~10,351,493원	~11,139,704원
우선공급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20% 이하	~8,405,411원	~9,898,160원	~10,530,085원	~11,475,938원	~12,421,792원	~13,367,645원
	부부 중 한 명만	100% 초과	7,004,510원~	8,248,468원~	8,775,072원~	9,563,283원~	10,351,494원~	11,139,705원~
신생아일반공급,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9,806,313원	11,547,854원	12,285,099원	13,388,595원	14,492,090원	15,595,586원
일반공급	부부 모두	120% 초과	8,405,412원~	9,898,161원~	10,530,086원~	11,475,939원~	12,421,793원~	13,367,646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11,207,214원	13,197,547원	14,040,114원	15,301,251원	16,562,389원	17,823,526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9,806,314원~	11,547,855원~	12,285,100원~	13,388,596원~	14,492,091원~	15,595,587원~
<u> </u>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싱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 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પાંક					
	급액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 건축물 종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주택 외	내용 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토지	* 「농지법」; * 「초지법」; * 공부상 도를 * 종중소유 를 구체적인 사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리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 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3)

군복무중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 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IV-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14세대

구분	내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구미시에 거주하거나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대상자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지역: 해당지역 거주자(구미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거주자)
당첨자	■ ② 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선정방법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①무주택기간	3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0명	5	4명	25	
②부양가족수	35	1명	10	5명	30	
Ø+6/1-1] 33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③입주자저축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가입기간	17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기법기단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1 6 0			
■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	Y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E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1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IV-5.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

비고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 33세대

구분	내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구미시에 거주하거나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대상자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m'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본 공고는 60㎡ 이하 주택형이 없으므로, 1인가구 중 단독세대인 분은 생애최초 청약 불가)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당첨자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선정방법

비고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 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 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5단계	T008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7L □	· · · · · · · · · · · · · · · · · · ·						

-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해당지역 거주자(구미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거주자)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4.07.12.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쓰러구군	미뀰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105,862원	~10,723,007원	~11,407,592원	~12,432,267원	~13,456,941원	~14,481,615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105,863원~	10,723,008원~	11,407,593원~	12,432,268원~	13,456,942원~	14,481,616원~
	269220H, 220H	130% 포피 160% 이야	11,207,214원	13,197,547원	14,040,114원	15,301,251원	16,562,389원	17,823,526원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추첨공급	1인 가구	160% 이하	~11,207,214원	~13,197,547원	~14,040,114원	~15,301,251원	~16,562,389원	~17,823,526원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 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 건축물가액은	²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	네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건축물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T = 1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토지	단, 아래 경약 *「농지법」제 *「초지법」제 * 공부상 도료 * 종중소유 토 구체적인 시	우는 제외 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 c,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E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나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나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별표 3])

군복무중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청약자의 자녀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청약자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 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의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 직장 ② 세무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③ 납부내역증명	③ 건강보험공단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납부내역증명 ④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①, ⑤ 세무서 ② 해당 직장 ③ 국세청 홈택스 ④ 해당 직장 / 세무서

⑤ 종합소득세 신고서(종합소득금액 증명 제출자에 한함)	
※ 해당연도 내 환급받지 못한자 또는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 직접납부자는 납부내역증명을 함께 발급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기재 등 상세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만 19세 이상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 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	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 /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근 로 자	금년도 신규 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 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③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①, ②, ③ 해당 직장 ④ 국민연금공단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①, ② 해당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① 해당 직장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②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자 영 업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② 법인등기부등본	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② 등기소
자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①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본)	① 국민연금공단,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① 해당 직장 / 세무서 ② 해당 직장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공급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 해당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 인 것으로 간주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월별급여명세표 및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② ①번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① 해당 직장 ② 국민연금공단
	무 직 자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 : 전년도 소득이 없고,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아닌 경우 ② 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반드시 제출 : 전년도 소득이 있으나,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아닌 경우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① 견본주택 비치 ②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등으로 인해 전년도 소득관련 증빙서류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해당 서류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기재 등 상세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상기 소득입증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표함) 전원의 자산입증서류

해당자격		자산입증 제출서류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③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①, ③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② 주민센터 (행복복지센터)				
"부동산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추가 (해당자)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인 경우)	①, ② 주민센터 ③ 서울(서울시이택스), 서울 외(위택스)				
	해당자	농지법 및 촉지법 등에 따라 토지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 ① 농지대장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① 주민센터 ② 지자체 축산과 ③ 토지이음(www.eum.go.kr)				
"부동산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①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٧.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구미시에 거주하거나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4187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3	자격요건 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적	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	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형에 한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	여 6개월 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	트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통장		[청약예금의 이	치금액			
자격요건	л н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그 밖의 광역시	트레기 미 브기제어기		
	구 분	(구미시 및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m² 이하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	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 당첨자 선정 순서					
	■ 884 년 8 분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당첨자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추첨					
선정방법	- 2순위: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해당지역 거주자(구미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거주자)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전용면적 85㎡ 초과	-	100%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①무주택기간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35		0명	5	4명	25
②부양가족수			1명	10	5명	30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③입주자저축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가입기간	17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가입기신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베구시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2 + 3		

※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문	Ч в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동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 (외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청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당등본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론에 등재된 제대원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우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의적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 - 자존배공자인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 - 자존배공자인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 - 자존배공자인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 - 대존배공자인정자의 안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 - 대존대공자인 안30세 이상인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반30세 미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제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반30세 미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제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반30세 미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_ 00 .00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당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비고		 로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 주택소유 및 부적격자 당첨명단 관리 등 유의사항

구분	신청자격
주택소유여부	■ 검색대상 : 주택공급 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확인방법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시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7208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및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판정기준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나, 분양권등을 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번경일 3. 그밖에 주력소유이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성이할 검약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FS에 해당되는 경약에는 주택을 소용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너 지역 또는 면의 영점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 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분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자 사용증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역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소유자기 '가족권제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준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산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뿐임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과 정부시적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자력공리신청자가 숙한 세대가 20제곱리면 이하의 주택 또는 보양권들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국제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국제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들을 수유하고 있는 경우(는, 노부모부양자 독발경관 신청자 제외) - 가장계의 남양가족 원형 여부 된다 시작측으로 그 배우가 중 한 덩이라로 주택 또는 분양권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국제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들을 수용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수배우자의 공부상 주택으로 통제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시험이 설치 아니라는 패가이거나 주택이 열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이상 기속으로 기록하고 함께 보는 경우 경우 경우 기상되어 함께 따른 수업을 일본하고 기관 경우 경우 기상되는 기상되어 함께 따른 수업하고 있는 경우 경우에는 직원증가의 오는 건축인과 없이 건축이 안된 주택 경시의 합신 기상되어 가상되어 생각하고 있는 경우 경기에 대한 건축하고 있는 건축으로 환경이 함께 보고 기상되어 가장하고 있을 및 제2조제 이상 가수 수당시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마수한 사람은 제외 이 구약기간들은건의 건축이
소형・저가주택	• 전용면적 60m'이하이며,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됨 ① 현재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 특례에 해당됨
1호를 보유한	②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경우의 특례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01-17-1	※ 소형·저가주택 공시가격 적용기준
「ᄌ태고그에 괴치 그건	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별표1 제1호 가목2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제3항 및 제57조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단청의 취소된 자는 단청의보다 (소도과 및 통기 청양기업자업 1년, 소도과업 2개원 의추자업 2개원(공고사청회원는 지역 기준) 등에 다른 보양주택(보양점회 고구의대중택 표칭)의 의주자(제2) 사전청양의
EXCUSION SINCE	•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첨자로 봄.(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1.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등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이 해당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이중당첨자 및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①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③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④ 부적격 소명 대상자로서 사업주체가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4항에 따라 아래 해당하는 경우 당첨자로 인정합니다.
제21조 제3항 제24호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VI.

청약신청 및 일정, 장소, 구비서류 안내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기관추천 /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2024년 07월 22일(월)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견본주택 : 10:00~14:00)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PC: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앱 견본주택: 경상북도 구미시 원평동 1071-8
일반공급	1순위	2024년 07월 23일(화) 09:00~17:30	• 인터넷 청약(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일반중합	2순위	2024년 07월 24일(수) 09:00~17:30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 스마트폰앱: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또는 신한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 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창구 접수시간: 09:00~16:00.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본인 신청 시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	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제3자 대리신청 시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추가서류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표		
(배우자 포함)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첨자발표 서비스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4.07.31.(수) ~ 2024.08.09(금)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하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문자	- 제공일시 : 2024.07.31.(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및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 자격별 구비서류**(현장견본주택 방문 청약신청자는 청약 신청 시에 제출, 인터넷 청약신청자는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해 당첨자 발표일 이후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기간에 제출)

	서류유형			
구 분	필 수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0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청약자(본인)	• 견본주택에 비치, 청약홈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무주택 입증서류(무주택 서약서로 대체)
	0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청약자(본인)	• 견본주택에 비치, 개인정보수집안내(신청자용)
	0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청약자(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되어야함.
	0	1201-02(21-2)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0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청약자(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되어야함.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청약자(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0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은 불가)
75 113	0	신분증	청약자(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공통 서류	0		청약자(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의 의거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하여,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0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존속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한 주택공급신청자 단신부임을 증빙하기 위한 경우.
	0	콜립수에 단한 시골증증	피부양 직계비속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한 주택공급신청자 단신부임을 증빙하기 위한 경우.
	0	청약통장순위 (가입)확인서	청약자(본인)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장애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제외]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에서 인터넷 청약한 경우 생략
	0	복무확인서	청약자(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군복무기간(10년 이상) 명시
	0	해외체류 증빙서류	청약자(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①비자 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반드시 제출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안됨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0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청약자(본인)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안됨
(2276)	0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청약자(본인) 및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관계 포함하여 "상세" 발급
	0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 발급
	0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여권번호 필수 기재발급)	배우자 및 세대원	• 배우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배우자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 자녀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제출 필요
기관추천 특별공급	0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증서	청약자(본인)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확인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0	다자녀 배점 기준표	청약자(본인)	• 견본주택에 비치

		T		
	0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주택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0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직계비속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청약자(본인) 또는 배우자	•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전부 표기
	0	한부모가족증명서	청약자(본인)	• 여성가족부의「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0	호이과게즈며 티/사네)	청약자(본인)	• 만19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0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의 자녀가 미혼으로 미성년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
	0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청약자(본인)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의료기관명과 직인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하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는 제출 불가)
	0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0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 견본주택에 비치, 임신의 경우
	0	자격요건 확인서	청약자(본인)	• 견본주택에 비치, 혼인신고일, 자녀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금액 기준 소득확인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청약자(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청약자(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0	소득증빙서류	청약자(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소득입증서류)
	0	부동산소유현황 (추첨제 청약 신청자)	청약자(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신혼부부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청약자(본인) 또는 배우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세미만 자녀를 증명하기 위한 경우
특별공급	0		직계비속	•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에만 해당
	0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직계비속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을 경우
	0	기본증명서	직계비속	•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0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의료기관명과 직인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하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는 제출 불가)
	0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청약자(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0	임신증명 또는 출산이행확인각서		• 견본주택에 비치, 임신의 경우
	0	비사업자 확인각서	청약자(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견본주택에 비치, 비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0	가점산정기준표	-	• 견본주택에 비치
	0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0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비속	•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7208	0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피부양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청약자(본인)	• 만 30세 미만 공급신청자가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0	는 한민계 중경시(경제)	피부양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0	자격요건 확인서	청약자(본인)	• 견본주택에 비치 • 혼인신고일, 자녀수, 과거1년 근로/사업소득세.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월평균 소득 확인
	1	I .		

	0			청약자(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			_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만 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0		직계비속	- 혼인신고일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0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의료기관명과 직인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하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는 제출 불가) 입양의 경우		
-		0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청약자(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0	임신증명 또는 출산이행확인각서		• 견본주택에 비치, 임신의 경우		
-	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청약자(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의료) 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		0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청약자(본인)	• 공고일 이후 발행분 (발급처 : 해당 직장 / 세무서)		
		0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청약자(본인)	•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납부내역증명 포함)		
_	0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청약자(본인)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0		소득증빙서류	청약자(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소득입증서류) ※ 상기 [표1], [표2] 제출 서류 참조		
		0	부동산소유현황 (추첨제 청약 신청자)	청약자(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0		청약자(본인) 또는 배우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세미만 자녀를 증명하기 위한 경우		
		0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미혼인자녀(입양포함)가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에만 해당		
		0	_ 가족판계증명서(장세)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가구원수에 포함시		
		0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직계비속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0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이상 계속하여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었음 을 확인하며,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 관계를 "전체포함"으로 발급)		
-		0	비사업자 확인각서	청약자(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견본주택에 비치, 비사업자의 경우		
		0	사업주체에서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자	• 사업주체에서 청약 적격여부를 판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타 서류		
	0		인감증명서	청약자(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은 불가)		
제3자 대리인	0		인감도장	청약자(본인)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신청 시 추가사항	0		위임장	청약자(본인)	• 견본주택에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1 1 10	0		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VII.

당첨자 선정 및 발표

■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일시 : 2024년 07월 31일(수) • 확인방법		
OIHLTII	1순위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일시 : 2024년 08월 12일(월) ~ 2024년 08월 14일(수)(10:00~17:00) • 장소 : 견본주택(경상북도 구미시 원평동 1071-8)	
일반공급	2순위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또는 신한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 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 됨.
- ※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규에 위반되는 행위로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공급금액 총액의 5%는 위약금으로 사업주체에 귀속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당첨자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함

* 가정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청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서정

- ※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동·호를 배정 받은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 됨(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등이 적용 됨)
-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 계약체결일정 및 당첨자 서류 확인 일정은 사전 예약제로 진행할 예정이며, 각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및 당첨자들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료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가점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 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60m² 초과 85m²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적용 - 전용면적 85m²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구미시 거주신청자가 대구광역시 거주자 및 경상북도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 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된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6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 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VII-2.

공통

유의사항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에 의거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는 계약체결 이전에 아래 자격 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당해 거주기간, 배우자 분리세대 등)
-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추첨 및 계약체결일은 별도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서류 미제출 사유로 자격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일에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소명자료 제출 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접수된 서류를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합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도 대리 신청자로 봅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이내 제출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 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 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 검증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신청내용과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을 하지 않을시에는 부적격자임을 확인하여야 최종 부적격 처리되며, 서류 미제출로 및 계약하지 않을 시 계약 포기로 간주하여 당첨자로 부류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일정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공지사항은 추후 '힐스테이트 구미더퍼스트' 홈페이지(https://hillstate.co.kr/s/gumi)를 통해 별도 안내 할 예정입니다.

■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계약 일정 안내

구 분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계약 장소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2024년 08월 02일(금) ~ 2024년 08월 10일(토) 9일간, 10:00 ~ 17:00	힐스테이트 구미더퍼스트 견본주택 (구미시 원평동 1071-8)

[※] 서류접수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변동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해 별도 안내 예정임.

■ 계약체결 전 당첨자 자격확인서류(계약시 필요서류)

	서류	유형				
구 분	필 수	추 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0		신분증	청약자(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0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청약자(본인)	• 견본주택에 비치, 개인정보수집안내(신청자용)	
	0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청약자(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0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0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청약자(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0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청약자(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공통서류 공통서류	0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청약자(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의 의거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하여,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중동시뉴		0	복무확인서	청약자(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	
		0	전세피해자 확인서류	청약자(본인) 또는 세대원	• 전세피해자 낙찰주택 소유기간(보증금의 일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받아 소유한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우 ※ 단, 낙찰 주택이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주택공시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① 임대차계약서: 해당 임차주택, 사본 제출 ② 낙찰 증빙서류: 매각허가결정서 또는 매각결정통지서 사본 ③ 등기사항증명서: 해당 임차주택, 원본 제출 ④ 채권자 확인서류(낙찰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할 경우: 경매 낙찰시(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의 사본) / 공매 낙찰시(배분계산서 등의 사본)	
	0		해외체류 증빙서류	청약자(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안됨	
		0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청약자(본인) 및 세대원	• 여건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안됨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0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청약자(본인) 및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 발급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0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 발급	
		0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여권번호 필수 기재발급)	배우자 및 세대원	• 배우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배우자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 자녀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제출 필요	
특별공급 당첨자 (예비입주자 포함)	0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증명서류	청약자(본인) 및 세대원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소득증명서류 포함하며, 특별공급 견본주택 방문청약을 하며 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	
가점제 당첨자 (예비입주자 포함)		0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0	다보니시 취이니	шот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당첨사실 확인서		배우자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_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세대분리된 경우
		0	ᄌᇚᄃᄅᄑᅔᄫᄸᆀᄑᅘ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0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비속	•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청약자(본인)	• 만 30세 미만 공급신청자가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0	본 한 한 계 ㅎ 증시(증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기득단계 6 6시(6세)	메구시	- 구성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ㅣ 피부양 직계존속ㅣ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0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 일로 하여 출입국기록출력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0	여부를 "Y"로 설정, 발급)	피부양 직계비속	-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THAT FULLO	0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본인)	• 청약자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0		위임장	청약자(본인)	• 견본주택에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20 M TAM6	0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해당 주택에 대한	케디 조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등
부적격		0	소명 자료	해당 주택	• "소형·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통보를 받은 자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ᆀᄄ	게다 기가의 단청되자 민국회에서 기계자스 만 집아지가 회에서를 드 남자가 나이에 대한 소대자를 이해
		0	인정하는 서류	해당 주택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가점점수 및 청약자격 확인서류 등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 일체

-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자격검증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 체결 이전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세대주, 해당 거주 기간, 주택 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상기 기간 내에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적격 여부를 확인받아, 계약 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 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 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절차로 계약 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VIII.

계약 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분양대금 확인 후 지정된 계좌(계약금)로 계약금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구 분	계약기간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계약 장소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2024년 08월 12일(월) ~ 2024년 08월 14일(수) 3일간, 10:00 ~ 17:00	힐스테이트 구미더퍼스트 견본주택 (구미시 원평동 1071-8)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유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 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 후 무통장 입금영수증을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은 불가합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계약금(최초 계약시)	우리은행	2948-109-4718313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중도금/잔금		ex) 101동 101호 홍길동 : 1010101홍길동		

- 계약금(최초 계약시)상기 명시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중도금, 잔금은 향후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가능, 견본주택 현금수납불가)
-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모계좌(우리은행 1005-804-650179 예금주 : 한국투자부동산신탁㈜로 관리됩니다.
- 세대별 분양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시, 세대별 공급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 : 102동503호 홍길동 →1020503홍길동)(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상기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합니다, 단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계약과 관련한 계약금 및 중도금 · 잔금 납부계좌는 상기의 분양대금 납부계좌와는 다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받으며 계약자가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견본주택에서 현장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중도금은 시행위탁자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대출 승인 시,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상기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에 변동이 있을 경우 계약자에게 서면 통지하기로 하며, 이 경우 잔여 분양대금은 변경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만일 계약자의 계약서상의 주소지 또는 연락처가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 또는 연락처 변경 후 지체 없이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내용(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시행위탁자 및 시행 수탁자, 시공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각 분양대금의 납부기일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공급계약서에 따른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분양대금을 과오납할 경우, 사업주체로 환불신청서(사업주체 양식) 및 구비서류(입금확인증, 통장사본, 신분증 등)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안내

	서류	유형		발급기준	
구 분	필 수	추 가 (해당자)	해당서류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0		수입인지(인지세)	-	• 수입인지 세액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2만원,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4만원,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수입인지 구입처> - 오프라인 : 우체국·은행(해당 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고트니크		0	자격검증서류	-	•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 검증 서류 일체(입주대상자 자격 검증 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공통서류		0	추가 개별통지 서류	-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 통지)
	0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	• 견본주택에서 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0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 아파트 계약용(본인 발급) ※ 입주대상자 자격 검증 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0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으로 대체

	0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 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등록증)
대리 계약시 추가 구비서류	0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계약자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당첨자 또는 예비입주자 본인 발급)
	0		위임장	계약자	• 견본주택 비치(당첨자 또는 예비입주자 인감도장 날인)
	0		대리인 신분증, 도장	대리인	• 재외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 거주 사실 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외 동포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1부)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7.12.)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의 계약 체결기간 준수합니다.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전산검색 등 청약자격 유무 판단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이후라도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제출함으로써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 합니다.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후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됩니다.
-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의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소명할 경우, 사업주체에서 판단하여 한국부동산원에 당첨자명단에서 제외 요청할 예정이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이후 청약통장이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 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로 기재한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 상기 기준에 따라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사실 유무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 및 당첨 사실을 포함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합니다)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 시 체결된 건물의 공급면적 및 대지 공유지분은 공부정리 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경우에 계약서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여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인한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이나 증. 개축 또는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소음·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 등으로 생활환경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명칭 및 동·호수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할 예정이므로, 계약자는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 제1항 및 제2 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 정하여 공급합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단, 부적격당첨자로 판명된 자는 무순위(사후) 공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본 공급계약 및 발코니 확장 계약 등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등은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연대하여 균등 납부합니다)
- 부동산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수입인지(기재금액 1억원 이상~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10억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를 계약서 작성시점에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해당 수입인지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 필수 제출 서류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변심,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선택하는 마감재 선택사항 및 플러스옵션계약은 변경이 불가하며, 공사에 착수하거나 별도품목 상품을 제작업체에 주문 또는 발주한 이후에는 해제가 불가하므로 이점 유념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 분양계약서 및 계약구비서류를 준용합니다.
- 사업주체가 마감자재업체의 선정 및 시공 상의 고려 등의 사유로 계약자가 계약 시 선택한 마감자재의 선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이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기로 하며, 이 경우 통지의 방법 및 효과 등은 분양계약서를 준용합니다. 이 때, 계약자가 사업주체의 위 통지를 수령하거나 또는 수령 간주된 후 2주내에 사업주체에 대하여 서면으로써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자가 마감자재 등 선택사항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합니다.

■ 중도금 납부 및 대출 알선 안내

- 사업주체는 중도금 대출의 알선에 관한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금융기관과의 혐의에 따라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자와 금융기관 간의 중도금 대출 알선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 아래 사항들은 중도금 대출의 알선이 가능한 경우에 관한 안내사항이며, 사업주체는 중도금 대출의 알선, 대출금액대출조건 및 대출 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보장하거나 보증하지 않습니다.
- 분양사무소 및 견본주택은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 상담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출 여부에 대한 확정을 할 수 없으며, 이를 내용으로 하는 어떠한 보장 또는 보증은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대출 여부는 계약자의 대출 적격사유 등을 고려하여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계약자의 대출 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등의 내용을 근거로 사업 주체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대출 알선이 제공되지 않거나, 알선이 제공될 경우라도 계약자의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부적격 등으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경우는 본 아파트 공급계약의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본인의 책임으로 공급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의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무이자"로 총 분양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위탁자 및 시공사가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 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 협의 조건(중도금 무이자 조건)에 의거 계약금 5% 완납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공지 및 안내예정이며, 시행위탁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자는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알선은 사업주체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 및 관계자는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의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시행위탁자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출 알선이 제한되거나 중도금 대출이 제외된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계약시 약정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합니다.
- 본 주택은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시행위탁자가 지정한 금융기관과 적격대출가능 계약자가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중도금대출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대출 실행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금액을 본인의 책임으로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함)
- 시행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5% 완납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며, 계약금 일부 미납 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 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 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 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의 지연이자는 분양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보증은 세대당 2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시행위탁자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행위탁자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시행위탁자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 보증수수료, 기타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2021.10.21. 발표된「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DSR규제가 강화되어 추후 잔금 대출시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별 대출한도가 축소되거나 대출자체가 거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될 문제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시행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납부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시행위탁자가 납부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시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기일 내에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 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 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기타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를 교란시키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전염병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 허가청 요청시 분양계약 관련 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색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지하철, 소음, 조망, 일조, 학교,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이후 주소 또는 연락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시행위탁자, 시행수탁자 및 시공사 에게 즉시 서면(주민등록표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타사 또는 사업주체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 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정책 변경(DTI, LTV, DSR 등)에 따른 중도금 대출 비율 축소 및 불가시 시행위탁자, 시공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시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제시한 중도금 대출 조건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조건에 따라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생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는 수분양자가 책임집. 정부정책 변경 등에 따라 시행위탁자가 중도금 대출금융기관 알선 불가시 수분양자가 직접 중도금을 계약 시 약정된 회차, 일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분양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자(분양, 입주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며 계약자(분양, 입주자)는 이를 승낙하여야 합니다.
- 양도받은 분양대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제반 보증(부담금대출보증, 사업비대출보증, 조합주택시공보증, 분양보증 등)에 관련된 채권에 우선 충당하고, 더하여 기타 사업정산 후 잔여액이 있을 경우 사업주체에게 반환하기로 합니다.
- 아파트 공사 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 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27호 및 「주택법 시행규칙」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도장 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가구공사 등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입주자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입주예정일 : 2027년 4월 예정(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지정기간에는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전염병 발생,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IX.

추가선택품목 계약

■ 발코니 확장

1) 타입별 발코니 확장공사비 및 납부 방법

(단위 : 원, VAT 포함)

약식표기(타입)	발코니 확장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시		2024.12.15	입주지정일	미포
84A	28,800,000	2,880,000	2,880,000	23,040,000	
84B	29,100,000	2,910,000	2,910,000	23,280,000	
114	38,500,000	3,850,000	3,850,000	30,800,000	
132	46,800,000	4,680,000	4,680,000	37,440,000	
162	56,100,000	5,610,000	5,610,000	44,880,000	

- 발코니 확장과 관련된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품질(타사 제품 포함)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또는 업체선정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충별, 위치별로 창호 규격 및 사양(개폐방향, 제조사, 프레임, 유리, 손잡이,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수입인지(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2만원)를 계약서 작성시점에 계약서에 첨부해야 하며, 해당 수입인지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 필수 제출 서류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창 표면 등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직접 외기에 면하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추위를 느낄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 등이 주택형별 또는 각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해 마감 재료의 특성과 규칙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또는 업체선정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충별 위치별로 창호 규격 및 사양(개폐방향, 제조사, 프레임, 유리, 손잡이,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기준 : 「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 계좌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발코니 확장 공사비	우리은행	2948-109-9618716	한국투자부동산신탁㈜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ex)101동 101호 홍길동 : 1010101홍길동

- 발코니 확장 대금은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중도금, 잔금은 향후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가능, 견본주택 현금수납불가)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모계좌(우리은행 1005-604-663475 예금주 : 한국투자부동산신탁㈜로 관리됩니다.
- 세대별 분양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시, 세대별 공급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 : 102동503호 홍길동 →1020503홍길동)(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상기 발코니 납부계좌 및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및 추가 선택품목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비용을 납부한 무통장 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 확인서 등은 계약체결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에어컨 및 추가선택사항 옵션품목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구분	주택형	에어컨 설치공간(확인요망)	선택안	선택사항	고그그애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十七	구백영	에어진 결사중진(확인표명) 	선택인	선택자명 	공급금액	계약시	2025.02.15	입주지정일	니프
	84A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5대	일반	9,240,000	924,000	924,000	7,392,000	
_	04A	/ 1 글,ㅜ8,염글1,염글2,염글3	5대	고급(공기청정기능포함)	10,740,000	1,074,000	1,074,000	8,592,000	
	84B	거실,주방,침실1,침실2	6대	일반	10,780,000	1,078,000	1,078,000	8,624,000	
	04b	,침실3,알파룸	6대	고급(공기청정기능포함)	12,580,000	1,258,000	1,258,000	10,064,000	
	84B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5대	일반	9,350,000	935,000	935,000	7,480,000	
	거실확장형선택시	거절,구멍,심절1,심절2,심절3 	5대	고급(공기청정기능포함)	10,850,000	1,085,000	1,085,000	8,680,000	
	114	거실,주방,침실1,침실2 ,침실3,침실4+알파룸	7대	일반	12,430,000	1,243,000	1,243,000	9,944,000	
전실 :			7대	고급(공기청정기능포함)	14,530,000	1,453,000	1,453,000	11,624,000	제조사
인크	114 거실확장형선택시	거실,주방,침실1,침실2 ,침실3,침실4	6대	일반	10,890,000	1,089,000	1,089,000	8,712,000	
			6대	고급(공기청정기능포함)	12,690,000	1,269,000	1,269,000	10,152,000	
	132	거실,주방,침실1,침실2 ,침실3,침실4	6대	일반	11,220,000	1,122,000	1,122,000	8,976,000	세포시 삼성
	132		6대	고급(공기청정기능포함)	13,020,000	1,302,000	1,302,000	10,416,000	
	132	거실,주방,침실1,침실2	7대	일반	13,310,000	1,331,000	1,331,000	10,648,000	
	H마스터룸선택시	,침실3,침실4(H마스터룸2개소)	7대	고급(공기청정기능포함)	15,410,000	1,541,000	1,541,000	12,328,000	
	162	거실,주방,침실1,침실2		일반	12,100,000	1,210,000	1,210,000	9,680,000	
	102	,침실3,침실4	6대	고급(공기청정기능포함)	13,900,000	1,390,000	1,390,000	11,120,000	
	84A		3대	일반	5,610,000	561,000	561,000	4,488,000	
	0 4A		3대	고급(공기청정기능포함)	6,510,000	651,000	651,000	5,208,000	
거실,주방,침실1	84B	거실,주방,침실1	3대	일반	5,500,000	550,000	550,000	4,400,000	
	04В		3대	고급(공기청정기능포함)	6,400,000	640,000	640,000	5,120,000	
	84B		3대	일반	5,610,000	561,000	561,000	4,488,000	

(단위 : 원 / VAT포함)

거실확장형선택시	3대	고급(공기청정기능포함)	6,510,000	651,000	651,000	5,208,000
114	3대	일반	5,610,000	561,000	561,000	4,488,000
114	3대	고급(공기청정기능포함)	6,510,000	651,000	651,000	5,208,000
114	3대	일반	5,610,000	561,000	561,000	4,488,000
거실확장형선택시	3대	고급(공기청정기능포함)	6,510,000	651,000	651,000	5,208,000
132	3대	일반	6,160,000	616,000	616,000	4,928,000
132	3대	고급(공기청정기능포함)	7,060,000	706,000	706,000	5,648,000
132	3대	일반	6,160,000	616,000	616,000	4,928,000
H마스터룸선택시	3대	고급(공기청정기능포함)	7,060,000	706,000	706,000	5,648,000
162	3대	일반	6,710,000	671,000	671,000	5,368,000
102	3대	고급(공기청정기능포함)	7,610,000	761,000	761,000	6,088,000

- 시스템 에어컨 공사비에는 취득세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지자체로부터 계약자에게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시스템 에어컨 옵션금액은 아파트 공급금액과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설치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 수준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있습니다.
- 추후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며 설치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 계약사항이며, 계약 후 변경 및 취소가 불가합니다.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옵션계약도 자동으로 해제 또는 취소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시스템 에어컨은 편의상 냉난방용으로 설치하였으며, 본 공사시 적용될 시스템 에어컨은 난방기능이 없습니다.
- 상기 옵션품목의 계약조건(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의 납부금액 또는 납부일정, 계약체결 일정 등)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는 발코니 내 실외기실에 설치되며 단위세대 타입별로 실외기실 위치 및 크기가 상이하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무상제공품목

품목	적용실	주택형
파우더장 선택제(좌식/입식)	침실1	전타입
욕실1 선택제(욕조형/샤워부스형)	욕실1	84A,84B,114
주방가구 도어 스타일 선택제 (BeigeGarden/EuropeanForest/7PMSunset)	주방	전타입

- 상기 무상제공 품목 시공은 계약자가 임의로 시공 위치 지정 및 마감재 선택이 불가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방가전 품목은 주방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주택형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점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이후 가전옵션 제품 특성 상 시장 판매가가 감액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차액이나, 감액에 대한 계약 해지 및 위로금 지급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일부 품목은 주택형별 사양이 다르므로, 해당 주택형의 형태를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공사 시 형태, 재질, 사양 등이 동급 수준의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바닥 타일의 시공은 계약자가 임의로 시공위치 지정이 불가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타일의 패턴이 일정하지 않아 본공사 시 견본주택과 타일패턴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타일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타사제품 포함)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일 또는 천연가공석 등 이질재가 만나는 부위는 견본주택과 다르게 별도의 줄눈재가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무상제공품목 시공은 계약자가 임의로 시공 위치 지정 및 마감재 선택이 불가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 가전 유상옵션

									, - · · - , - · - ,	
주택형 		품목		미테며	공급금액 -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구택8	古古		모델명	0004	계약시	2025.02.15	입주지정일	미포	
	전 주택형	택1	빌트인 냉장고 (냉장/냉동/김치)키큰장	삼성전자	비스포크(코타화이트)	5,960,000	596,000	596,000	4,768,000	

(단위: 원 / VAT포함)

		LG전자	오브제(미스트베이지)	6,360,000	636,000	636,000	5,088,000	
	기능성 오븐	삼성전자	NQ36A6555CK	320,000	32,000	32,000	256,000	
	빌트인 식기세척기	삼성전자	DW60T7065SS	850,000	85,000	85,000	680,000	
	3구 인덕션	SK매직	IHR-B3200	480,000	48,000	48,000	384,000	84A 다이닝 누크 설치시 3구인덕션기본제공
	H-BELL 살균청정환기시스템		-	210,000	21,000	21,000	168,000	
			-	2,360,000	236,000	236,000	1,888,000	
	현관미세먼지특회	-	2,400,000	240,000	240,000	1,920,000	현관중문 3연동 슬라이딩 + 천정형 에어샤워 + 의류미세먼지클리너 (현관중문과중복선택불가)	
	드레스룸빌트인제습	·기	-	780,000	78,000	78,000	624,000	

- . 추가선택품목 시공은 계약자가 임의로 시공 위치 지정 및 마감재 선택이 불가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주방가전 선택품목은 주방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주택형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점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 . 추가 선택옵션 계약 체결 이후 가전옵션 제품 특성 상 시장 판매가가 감액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차액이나, 감액에 대한 계약 해지 및 위로금 지급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닏다.
- . 추가선택품목중 일부품목은 주택형별 사양이 다르므로, 해당 주택형의 형태를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공사 시 형태, 재질, 사양 등이 동급 수준의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현관미세먼지특화 시스템 유상옵션 선택 세대의 경우 기기 사용시 세대 안으로 먼지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 현관미세먼지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신발장에 의류 미세먼지 클리너가 설치되며 수납공간이 제한 됩니다.
- . 유상옵션 선택으로 독립형 후드가 설치된 세대의 경우 가스 쿡탑 사용이 제한됩니다. 추후 가스 쿡탑 이용 시, 가구 수정공사가 필요하며 이는 입주자 분임을 인지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 – 가구, 마감재,평면 유상옵션

(단위 : 원, VAT 포함)

구분		상세내용	타입	7.7.7.0#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_	十 世	성세내용	다입	공급금액	계약시	2025.02.15	입주지정일	미ᅶ	
현관		현관중문 (3연동슬라이딩도어-수동형)	전타입	1,320,000	132,000	132,000	1,056,000	가전옵션 현관미세먼지 특화 선택시 선택불가	
			84A	2,600,000	260,000	260,000	2,080,000	현관중문 또는 현관미세먼지특화와 중복선택가능	
		되고 디지아트쉬	84B	2,210,000	221,000	221,000	1,768,000		
	특화	현관 디자인특화 (와이드스토리지+신발장하부조명+벽시트판넬)	114	2,550,000	255,000	255,000	2,040,000	(132/162타입마스터룸포함)	
		(4 11—141111 (2011 1201 1102)	132	2,090,000	209,000	209,000	1,672,000	도어마감사양업그레이드,현관펜트리수납특화,신	
			162	3,360,000	336,000	336,000	2,688,000	발장하부조명,벽시트판넬)	
			84A	12,260,000	1,226,000	1,226,000	9,808,000		
		욕실1,2 고급형 (욕실1샤워부스) (외산타일+고급수전,도기+흑니켈샤워부스 +세면대상판베인급)	84B	12,460,000	1,246,000	1,246,000	9,968,000		
			114	15,900,000	1,590,000	1,590,000	12,720,000	고급형 샤워부스 / 고급형 욕조 중 택 1 선택시기본형선택불가능	
			132	14,850,000	1,485,000	1,485,000	11,880,000		
욕실	욕실		162	15,090,000	1,509,000	1,509,000	12,072,000		
학교 학교	특화	욕실1,2 고급형 (욕실1욕조형) (스탠딩욕조+외산타일+고급수전 도기	84A	13,940,000	1,394,000	1,394,000	11,152,000	스탠딩욕조(팬트타입132,162타입제외-기본제공)	
			84B	14,140,000	1,414,000	1,414,000	11,312,000	스태딩욕조 = 독립형욕조 명칭동일	
			114	17,580,000	1,758,000	1,758,000	14,064,000	그랜 6쪽으로 독립왕쪽으 당당당을	
		(ㅡ 큰 ᆼ ᆨ ㅗ ᆍ ᅿ 근 ᅴ ᆯ ᆍ 포 급 푸 근, ㅗ 기 +세면대상판(베인급)	132	9,510,000	951,000	951,000	7,608,000		
			162	9,820,000	982,000	982,000	7,856,000		
			84A	4,200,000	420,000	420,000	3,360,000		
침실	침실1	안방 붙박이장(슬라이딩도어)	84B	4,090,000	409,000	409,000	3,272,000		
	옵션		114	4,410,000	441,000	441,000	3,528,000		

				132	5,610,000	561,000	561,000	4,488,000	
				162	5,260,000	526,000	526,000	4,208,000	
				84A	4,000,000	400,000	400,000	3,200,000	
	침실2,3	3034	14100 = +1+1	84B	4,690,000	469,000	469,000	3,752,000	
	옵션	물인동(A	I실2,3 통합형)	114	5,290,000	529,000	529,000	4,232,000	- 3연동 슬라이딩+반침장(입식파우더)
				132	2,030,000	203,000	203,000	1,624,000	
				132	4,120,000	412,000	412,000	3,296,000	
		Н	마스터룸	162	1,530,000	153,000	153,000	1,224,000	가구 도어 + 시스템가구 + 붙박이장
				84A	4,520,000	452,000	452,000	3,616,000	
				84B	4,580,000	458,000	458,000	3,664,000	
	드레스룸 특화	드레스룸 특화	ALT1	114	7,890,000	789,000	789,000	6,312,000	벽판넬+조명선반+유리도어+착색포스트
	극와	(벽판넬+조명선반+		132	7,810,000	781,000	781,000	6,248,000	
		유리도어+착색포스트)		162	9,930,000	993,000	993,000	7,944,000	
				132	15,100,000	1,510,000	1,510,000	12,080,000	벽판넬+조명선반+유리도어+착색포스트
			ALT2-H마스터룸 선택	162	22,170,000	2,217,000	2,217,000	17,736,000	H마스터룸과중복선택가능
			1	84B	390,000	39,000	39,000	312,000	711 017 5 5 1 0 7 1 7 1 7 7 7 7
		거실 확장형(거실+알파룸 통합)			560,000	56,000	56,000	448,000	- 거실+알파룸 통합, 우물천정+단천정 특화
		0	=	84B	1,500,000	150,000	150,000	1,200,000	가구도어 + 시스템가구
	알파룸	일파룸	수납 펜트리	114	1,590,000	159,000	159,000	1,272,000	거실확장형/대형드레스룸선택시선택불가
		 알파룸 대형드레스룸		84B	1,300,000	130,000	130,000	1,040,000	거실 확장형/수납팬트리 선택시 선택불가
		유럽산 세라믹 타일 (포세린타일→유럽산세 라믹타일)	ALT1 (거실확장미선택)	84A	1,790,000	179,000	179,000	1,432,000	
	거실 아트윌			84B	1,870,000	187,000	187,000	1,496,000	
				114	1,930,000	193,000	193,000	1,544,000	
거실				132	2,200,000	220,000	220,000	1,760,000	
, _				162	3,130,000	313,000	313,000	2,504,000	
			ALT2-거실확장 선택 (거실+알파룸통합)	84B,114	1,730,000	173,000	173,000	1,384,000	
	조명 특화	거실(직부등) +안방+식탁+주방특화조명+13인치월패드		84A.84B	4,270,000	427,000	427,000	3,416,000	
				114	4,830,000	483,000	483,000	3,864,000	
				132,162	5,060,000	506,000	506,000	4,048,000	
			라이트+실링팬) 특화조명+13인치월패드	84B,114	6,760,000	676,000	676,000	5,408,000	거실확장형 선택시 선택가능 (거실+알파룸통합)
				84A	3,720,000	372,000	372,000	2,976,000	
				84B	4,120,000	412,000	412,000	3,296,000	
			ALT1 (고이로 (기사하자하다 서태)	114	4,370,000	437,000	437,000	3,496,000	
공용			(룸인룸/거실확장형미선택)	132	6,280,000	628,000	628,000	5,024,000	1
		복도		162	6,530,000	653,000	653,000	5,224,000	, 중복선택 불가
	벽면 마감재	시트판넬 옵션		84A	4,100,000	410,000	410,000	3,280,000	시트판넬또는세라믹타일
	-1 -1 -1	급년 (벽지→시트판넬)	ALT2-룸인룸 선택	84B	4,500,000	450,000	450,000	3,600,000	(택1)
		, , , , , ,	(침실2+침실3통합)	114	4,740,000	474,000	474,000	3,792,000	
				132	6,650,000	665,000	665,000	5,320,000	
			ALT3-거실확장형 선택 (거실+알파룸통합)	84B	4,400,000	440,000	440,000	3,520,000	1
				114	4,230,000	423,000	423,000	3,384,000	

				84A	5,480,000	548,000	548,000	4,384,000					
			ALT1	84B	6,110,000	611,000	611,000	4,888,000					
				114	6,500,000	650,000	650,000	5,200,000					
			(룸인룸/거실확장형미선택)	132	9,010,000	901,000	901,000	7,208,000					
		복도		162	9,650,000	965,000	965,000	7,720,000					
		세라믹 타일옵션		84A	6,070,000	607,000	607,000	4,856,000					
		디필급전 (벽지→세라믹타일)	ALT2-룸인룸 선택	84B	6,700,000	670,000	670,000	5,360,000					
		, , , , , , , , , , , , , , , , , , , ,	(침실2+침실3통합)	114	7,080,000	708,000	708,000	5,664,000					
				132	9,600,000	960,000	960,000	7,680,000					
			ALT3-거실확장형 선택	84B	6,540,000	654,000	654,000	5,232,000					
			(거실+알파룸통합)	114	6,300,000	630,000	630,000	5,040,000					
				84A	3,490,000	349,000	349,000	2,792,000					
				84B	3,440,000	344,000	344,000	2,752,000					
		혜링본마루 (침실), 포세린타일 (거실/주방/복도)	ALT1 (거실확장형미선택)	114	4,760,000	476,000	476,000	3,808,000	중복선택 불가 - 헤링본마루또는광폭강마루 (택1)				
			(12400124)	132	5,250,000	525,000	525,000	4,200,000					
				162	6,270,000	627,000	627,000	5,016,000					
			ALT2-거실확장형 선택	84B	3,470,000	347,000	347,000	2,776,000					
	바닥		(거실+알파룸통합)	114	4,770,000	477,000	477,000	3,816,000					
	마감재	광폭강마루 (침실), 포세린타일 (거실/주방/복도)		84A	2,970,000	297,000	297,000	2,376,000					
				A L T 1	84B	2,820,000	282,000	282,000	2,256,000				
			ALT1 (거실확장형미선택)	114	3,890,000	389,000	389,000	3,112,000					
			(12400164)	132	4,380,000	438,000	438,000	3,504,000					
								162	5,220,000	522,000	522,000	4,176,000	
							ALT2-거실확장형 선택	84B	2,940,000	294,000	294,000	2,352,000	
			(거실+알파룸통합)	114	3,990,000	399,000	399,000	3,192,000					
			· 아이닝 누크 '고급화선택필수)	84A	4,230,000	423,000	423,000	3,384,000	인덕션3구+독립후드+장식장 우물천정(+냉장고장옆벽면시트판넬추가) 주방고급화선택시선택가능				
			ALT1 	84A	11,680,000	1,168,000	1,168,000	9,344,000					
주방	주방 특화			84A	9,320,000	932,000	932,000	7,456,000	, - 세라믹 상판/벽체+				
	국지	주방고급화		84B	8,280,000	828,000	828,000	6,624,000] 세디크 중단/크세포] 상하부장라인조명+시트판넬				
				114	16,750,000	1,675,000	1,675,000	13,400,000	+우물천장+주방고급수전				
				132	16,580,000	1,658,000	1,658,000	13,264,000	1				
					162	14,070,000	1,407,000	1,407,000	11,256,000	1			

- . 상기 추가선택품목은 품목별 일괄시공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설비 및 인테리어 설계상 연관되어 있어 개별 아이템별 신청이 불가합니다.)
- . 실링팬은 별도 리모컨으로 동작하며 월패드 및 스위치와 연동되지 않습니다.
- . 조명특화 옵션시 세대 여건에 따라 픽처레일 일체형 조명에는 분절라인이 적용됩니다.
- . 조명특화 옵션 선택시 제공되는 스피커 일체형 식탁등의 스피커는 3개 중 1개에만 적용됩니다.

■ 옵션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
옵션납부 계좌	신한은행	5621-6799-600108	현대건설(주)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ex)101동 101호 홍길동 : 1010101홍길동

- •추가 유상옵션 계약은 시행수탁자인 한국투자부동산신탁㈜과 무관하며, 시공사 현대건설㈜과 별도 계약을 통해 진행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옵션품목은 계약체결 전에 상기 계좌로 공급 계약금액을 입금하여야 하며, 중도금 및 잔금은 향후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옵션품목비용은 인정하지 않으며,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혼돈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모계좌(신한은행 140-014-713620 예금주 : 현대건설㈜)로 관리됩니다.
- 세대별 옵션품목비용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시 세대별 옵션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
- 지정된 세대별 옵션품목비용(중도금, 잔금)은 납부지정일자에 입금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와 아파트 분양대금, 발코니 확장 공사비 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바랍니다.
- •옵션품목비용은 상기 납부계좌로 반드시 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뱅킹(견본주택 현금수납 불가)하시기 바라며, 입금 시 계약할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 : 101503호 홍길동 →101503홍길동)
- •옵션품목비용을 납부한 무통장 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 확인서 등은 계약체결시 지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발생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또는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Χ.

유의사항

■ 유의사항(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추후 미확인에 대한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시 체결된 건물의 공급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정리 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나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합니다. 단, 이 경우 정산금에 대하여 이자를 적용하지 않으며,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에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자연재해나 기상이변(장마, 폭우, 폭설 등), 전염병 발생, 전쟁, 내란,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그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그로 인한 입주지연보상금 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준공시의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대지지분의 변경 및 대지경계선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대지지분 소수점 이하 면적 차이에 대한 정산 없음)
- 각종 광고 및 홍보물(견본주택, 카탈로그, 리플렛, 전단, 공급안내, 홈페이지, 신문광고 등)에 표시된 주변 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및 각종 시설(도로, 공공청사, 학교, 지하철,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공공용지 등)의 조성계획(예정사항)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서 시행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 및 영상물 등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홍보물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에 따라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이미지컷 및 전시모형은 전 세대 발코니확장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또한 입주후 개별 확장으로 인하여 추후 창호 색상(유리 및 프레암)이 상이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과 견본주택 내 전시모형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 연출한 것으로 식재 및 색상, 시설물 등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견본주택, 사이버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내 외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신청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적용된 마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 수준의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PL창호(프레임, 유리등, 난간 등)의 제조사, 색상, 사양, 크기, 디자인, 손잡이, 하드웨어, 열림방향, 고정방식, 설치위치 등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 전시되어 있으나, 본 공사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은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온도조절기, 콘센트 및 조명, 바닥배수구, 욕실환풍기 등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와 소방감지기, 스피커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될 예정입니다.
- 발코니 확장부위는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는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입주자의 하자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용됩니다
- 개별인테리어 공사 등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계약자가 계약금, 중도금대출 상환 또는 계약금, 중도금대출 대환처리 및 잔금 완납 후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 및 상품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시공을 위하여 관련법령 내 적합한 세대 내외부 설계변경 등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해야 하며, 추후 설계 변경된 부분을 하자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의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명 단지내 시설명칭, 동·호수 표기, 단외부 색채와 계획, 조경시설물 등은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 지자체 승인 관련 등 현장 상황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 등의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명칭, BI위치 및 개소, 외부색채 및 마감재와 조경 계획, 외부상세계획 등은 인·허가, 경관/색채심의 및 법규의 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물외벽 색상은 모델하우스 모형 제작물에 사용하는 재료(바탕재료 및 도장재료)의 차이로 인해 실시공 시 모델하우스 모형과 비교하여 채도 및 명도가 상이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붕층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야간경관용 조명, 위성안테나, 피뢰침, 급배기 휀, 태양광 집광판, 소화수조 및 기타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해야 합니다.(시설물 위치 및 형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 예정 주택이 동간 거리로 인해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받을 수 있으며, 또한 공동주택의 특성상 충간, 세대간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사업부지 주변현황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 단지 주변의 개발 및 재건축 등으로 인한 주변시설(도시계획 시설 포함)이 변경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한다.
- 단지 내 엘리베이터와 인접된 세대에는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신청 및 계약하 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의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합니다.
- 당 단지는 「건축법」, 「주택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였으며, 단지 내·외 인접한 건물들과 건물 입면의 입면 장식, 각종 시설물, 조경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및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가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 단지 내에는 자전거 보관소, 재활용품창고,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실외기 설치공간, DRY AREA(채광, 환기, 방습 따위를 위하여 지하에서 지상으로 낸 통풍구), 실외기 및 환기시설(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위치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시설물의 위치는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진행 및 본 공사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의 외관디자인(입면, 옥탑구조물, 측벽, 몰딩, 창틀, 필로티, 공용홀, 동출입구, 캐노피, 지하출입구 등) 및 외부 시설물(문주, D/A, 자전거보관소, 쓰레기집적소, 조경, 실외 기 보관소 등)의 형태. 마감재 및 색상은 심의 및 법규. 디자인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배치 상 기계/전기실, 발전기실, 급배기구, 실외기실(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쓰레기집적소 인접실에는 냄새, 소음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가 안내하는 세대내의 위치에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라며, 청약신청 및 입주 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 이용시 주동주출입구에서 거리가 먼 곳에 차량이 주차될 수 있어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PIT 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 및 타사 또는 시공사 타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수락하고 요청 당사자가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조합으로 인한 요철 및 입면디자인으로 인한 장식으로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일부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 사의 결정에 따르며, 모든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마감재의 사양은 타입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분양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인지하신 후 분양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마감재(목록표)는 홈페이지(https://hillstate.co.kr/s/qumi)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전실)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각종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서 및 관련도면에 첨부된 자재 및 공법은 실 시공시 현장 여건 및 자재수급 여부에 따라 동등 수준의 자재 및 공법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실내 공기질 관리법」제9조에 따라 아파트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를 주민 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는 공사 시행 중 "계약자"의 위 표시재산을 품질관리 등을 위한 샘플하우스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는 샘플하우스 사용 이후 원상복구를 하고 "계약자"에게 인도하기로 합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해당 세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입주시까지 거주지, 연락처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내용(주민등록표등본 포함)을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로 필히 서면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제출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일부 동의 엘리베이터 홀 및 계단실은 직접 채광 및 환기가 제한됨을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자는 본 주택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집약관리를 위해 동법에서 지정하는 보험회사와 화재보험계약을 계약자의 부담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음으로써 화재 기타 이와 유사한 재해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홈페이지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충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이 상이함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사업승인시 해당관청에 제출한 총사업비 규모는 사업을 진행하기 전 사업주체가 예상하는 총사업비 규모를 예상하는 금액이며, 입주자 모집공고상의 금액은 사업주체가 사업승인권자로부터 "분양가 심의"를 받은 후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므로 당초 사업비 규모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개공지는 공공에 개방되는 시설로서 입주자 임의로 휀스를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없으며, 인 하가 협의에 따라 디자인, 범위, 레벨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작품의 위치 및 형상은 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미술작품 설치로 인해 일부 호실의 조망권, 일조권,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는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일부 단지내 보도는 상위법에서 정한 공공보행통로로 입주민 외에 외부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며, 입주 후 외부인의 보도이용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법 제54조 및 제60조 규정에 의거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평면도 및 시방서는 견본주택에 열람 가능토록 견본주택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는 준공 후 입주자의 원활한 입주 업무 지원, 신속한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일부를 일정기간(입주업무는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최대 5개월, 하자보수 업무는 입주지정기간 시작 일로부터 최대 27개월)동안 입주지원센터(가칭) 및 현장A/S센터(가칭)로 사용하며,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게 이에 따라 발생하는 시설 사용에 대한 일체비용(임대료 등) 및 시설 이전·축소 등을 요구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합니다.
- 본 모집공고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합의하여 결정하는 관할법원으로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법원으로 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 모집공고 및 분양계약서, 계약시 유의사항 등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은 확장형을 위한 합리적인 평면설계를 위하여 법정 발코니초과면적이 일부 산입되어 있으므로 착오 없기 바랍니다.
- 주거공용공간, 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조경공간, 단지 내/외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비상차량 동선 등) 등은 실시공시 대관 인·허가 과정이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현장 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공용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었으며, 면적 계산상 소수점 다섯째 이하 자리 처리방식 차이로 인해 전체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의 합과는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추후 등기를 위해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합니다.
- 견본주택 건립안과 설계도서가 상이한 점이 발생되는 경우 견본주택대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위세대 및 기타 설계변경사항이 관련 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설계변경 인·허가를 진행합니다
- 아파트 로비, 필로티 평·입면 계획(지하층 로비/복도 포함), 코아 평면 및 창호 형태와 설치계획 등은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 중 설계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주동 필로티 및 외부에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되며 향후 위치 및 설치 대수 등 세부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과 인접한 일부 세대는 이용객에 의해 소음, 조망, 일조, 진동, 냄새, 사생활권 침해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각 시설의 위치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각 시설의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01동 1층 : 어린이집, 유아놀이터 / 103동 지하1층 : 주민공동시설 (피트니스,실내골프연습장 등),관리사무소/ 101동 지하1층 : 작은도서관&독서실,경로당 / 103~105동 1층 : 어린이놀이터)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야간조명, 주차장 진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커뮤니티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배치 및 사용상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비주거시설의 위치와 주동 배치계획 상 각 동별로 지상, 지하 동선거리가 상이하고, 또한 같은 이유로 부득이하게 각 동별로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 홀까지의 거리가 상이하고, 주차대수가 고르게 분포되지 못하여 주차장이용에 불편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해당 동의 계획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보안·안전상의 문제로 경비실(이동식 또는 고정식)이 추가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저층부 세대의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한 CCTV의 설치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합니다.
- 단위세대 내에 실별 가구(장롱, 붙박이장)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마감, 단열재 두께 등의 차이로 도면에 표기된 크기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외부 창호는 일부 세대의 발코니 장식물 부착 및 내풍압 구조 검토에 따라 평형별, 세대별, 층수별, 주동별, 라인별, 침실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사양 등)이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방향, 날개벽체, 분할위치, 손잡이, 시스템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계획상 배치 및 충별, 향,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 등의 침해, 진동, 통풍, 소음, 악취 등으로 인한 피해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의 높이가 60m 초과시에는 지면에서 건축물의 높이 5분의4가 되는 지점에 돌침형피뢰침이 설치되어 건물외벽(특정세대 발코니앞) 미관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종 제작물은 광고홍보물이므로 세대별 단지 및 지구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서, 분양계약서를 살펴보시고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창호는 공사여건에 따라 ±50mm범위 내에서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발코니 초과 면적은 전용면적에 포함됩니다.
- 지하주차장 슬라브 골조공사는 재래식, DECK SLAB 또는 PC스라브로 시공되며 PC적용구간은 별도의 마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동전기실 위치 변경 등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분양계약서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후 청약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시공 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 및 조경면적, 자연지반면적, 인공지반 녹지면적 등은 축소 또는 증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승인허가도서 기준으로 전기차 주차구획과 충전설비의 설치 위치로 시공예정이나,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충전설비 설치 공간으로 인해 일부 주차구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지하주차장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되며, 각 주동 공용홀로부터 접근의 형평성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옥탑 및 지붕에는 경관조명, 항공장애등, 태양광집광판, 안테나 등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 최종 확정되며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용부 등에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되며, 사용에 따른 전기료가 발생됩니다.
- 엘리베이터에 면하거나 인접한 실은 엘리베이터 운행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홀의 형태는 동별, 호수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CCTV와 주차장 카메라의 설치 및 촬영은 입주자의 방범과 편의성을 위해 설치되므로 동의 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음을 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물의 발전기실에는 비상발전기가 설치 될 예정이며, 점검 등으로 인한 기기 작동 시 소음 및 진동 등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에 설치되는 H스위밍풀은 일정 사용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주택법」제21조에 의거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계획증인을 받은 사업부지 내 3개필지 에 대해 2심 매도청구 증소판결을 받음에 따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주택공급진행함을 양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단지외부여건

- 사업준공 이전 및 입주 후 인접지역의 개발로 인하여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미비, 공사차량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으며, 인접세대는 일조권, 조망권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 단지주변 도로에 인접한 주동의 일부세대의 경우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며, 대지주위의 도로에 대한 사항은 도시계획상 상위계획 및 최종측량 성과도에 따라 도로폭, 경사도, 레벨계획, 바닥마감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와 단지 주출입구에는 자동차 도로가 접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현장을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인접 지역 개발 등으로 개설되는 도로는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단지 모형도, 단지 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 도로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 바랍니다.
- 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수경시설, 조경시설, 포장 등),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인접 지역 개발 등으로 공사중 그리고 공사 완료후 소음. 매연. 먼지, 진동 등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에 접해있거나 단지주변에 있는 시설(도로, 보행로 등)은 시공범위가 아니며, 해당 시설 및 지형은 상위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고 변경된 계획레벨(도로, 공공보행통로, 판매시설 등)에 따라 실 시공시 단지레벨 및 길이, 형태, 종류가 일부 변경될수 있습니다.(시공범위 외 기반시설의 세부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도로와 본 건물의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유해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견본주택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일부 영향이 발생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부여건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탑승위치 등)은 견본주택에 비치된 사업승인도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 시공은 사용승인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됩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며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 주민공동시설, 경관조명, 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조경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공용부위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 및 경관조명, 단지홍보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 및 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서비스 운영과 유지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옥탑 및 측벽에는 조형물 및 경관조명 등이 설치될 수 있어 인접 세대의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운영, 유지, 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외부의 마감재, 색채계획 및 경관조명 계획은 건축(경관)심의에 따라 계획되었으며, 추후 관계 인·허가청의 협의과정 등에서 마감재, 색채 및 경관조명이 변경될 수 있으니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 광장,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발생 및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소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차량정차공간은 비상차량 및 소방차량 정차공간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 트렌치 시공시 시공부위의 주차구획은 트렌치폭을 포함하며, 트렌치가 배면, 측면에 시공될시에는 주차라인 마킹 시공 제외합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충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충 및 조경(식재, 시설물)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옥상은 관련법규에 따른 인허가 및 건축(경관)심의 권고에 따라 본 공사시 그 형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주차대수는 대지형태, 주동배치에 따라 동별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에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 동의 전면, 측면, 후면에 설치되어 있어 소음 및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차량출입구에는 주차차단기가 설치되며, 또한 주차 차단기의 위치는 현장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 및 지하주차장은 일반주차, 장애인용주차, 확장형주차, 경형주차, 평형주차, 전기차충전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용도별주차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분할형 입면창호는 하부의 외부창이 열리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Fix 창으로 설치됩니다.
- 주동 옥상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본 공사시 효율 개선 등의 사유로 설치위치, 수량, 크기, 각도, 높이, 사양 등 세부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주동과 저층부 포디움(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 지상주차장) 상부가 만나는 부분은 본 공사시 구조, 상품개선 등의 사유로 레벨, 마감, 디테일 등 세부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니 이점을 반드시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옥상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출입이 금지되고, 출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사업주체와 시공사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옥상으로 직접 출입할 수 있는 출입문은 보안을 위하여 출입이 통제될 수 있습니다.
- 출입구 경비실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외부 조경 및 토목공사는 향후 보행통로, 가로수, 도로, 시설물, 포장 등의 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소음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조망권 및 프라이버시, 사생활권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에 충분히 이를 숙지하고 확인하여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 주동 및 부대복리시설의 색채 및 외부마감재,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협의(경미한 변경신고)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램프나 계단, 옹벽, 조경석쌓기, 자연사면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용자로 하여금 프라이버시, 소음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및 주민공동시설 일체의 운영 및 유지관리는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의 이동식 가구 및 가전, 소모 집기 및 비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주민운동공간 및 단지출입구, 주차장출입구, 경비실, 관리사무소, 어린이 놀이터, 보육시설, 산책로 등 주민공동시설이 위치하는 곳의 저층 일부세대에는 소음 및 진동의 발생에 따른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동 출입구에서 쓰레기집적소까지의 거리는 동별로 상이합니다.
- 단지 내 설치된 놀이터, 운동시설, 경로당, 어린이집은 아파트 법적설치 시설이나 공동사용 여부에 따라 사용검사 완료 후 입주자회의 및 관리조약에 의해 공동 부담하며,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 각 주동은 최상층에 설치된 옥상 구조물에 따라 시야 및 조망에 제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상 구조물의 공법, 크기, 위치, 모양, 색상, 마감재 등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 단지 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 5항 및 6항에 의거하여 주차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최소 2.3m 이상,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의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최소 2.1m이상으로 설치하였으며,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 단지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향후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으며(아파트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아니함), 관리주체 및 주차시설 등에 대한 어떠한 권리주장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주변 및 상부에는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의 실외기실 및 설비시설이 설치될 수 있으며,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인접세대에는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설비시설 등의 위치 및 면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아파트,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계획된 복합시설로서 아파트의 주차구획 및 차량 차량출입구는 타시설과 구분이 되어 있으나, 일부 동선 등이 혼재될 수 있으며,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 아파트 및 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주출입구는 주변에 따라 위치 및 구조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동 출입구의 형태(평면 형태, 외관 형태) 및 크기는 동 평면의 형상 및 진입 방식에 따라 각 동 및 동 출입구별로 상이합니다.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야간 조명, 주차장 진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방서 협의 결과 비상차량동선 및 정차구간, 지상 및 옥상층의 에어매트 설치구간 등 위치 및 규격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에어매트 구간에는 교목 및 관목 식재는 배제되며, 소방서 점검시 사다리차 전개에 문제가 되는 경우 일부 수목에 대해선 상부 가지치기 또는 재배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집적소 위치는 사용성 및 지자체 조례 등의 최종 검토 결과에 따라 위치 및 개소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보관소의 형태, 규모는 단지 여건에 따라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소 위치 및 개소는 보행동선, 보관 편리성 등에 따라 현장 실시공시 각 동별로 위치가 삭제 또는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습니다.
- 하부에 필로티가 설치되는 동 또는 세대는 보행자들로 인해 소음 피해를 받을 수 있으며,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될 수 있고 캐노피의 형태, 재질, 색채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 엘리베이터 홀에 설치되는 설비 및 제습기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 주동 지하 및 지상층 로비 출입문은 마감을 고려하여 문 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우편물 보관함 및 무인택배함의 설치 위치 및 개소는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각 동별 혹은 코어별 접근의 형평성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상, 동 출입구, 부대시설, 조경 구간 등 단지 내 설치되는 난간의 형태, 높이, 재질, 색상 등은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골조난간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상 난간 턱 높이조정, 난간형태 및 재질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단위세대 창호계획 및 공용부 창호 변경등에 따라 입면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우오수 배관은 옥외배관 최종검토 결과에 따라서 실시공 위치 및 개소가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층 피트 공간은 지반현황에 따라 바닥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배치에 따라 일부세대는 주동간격이 좁아 프라이버시, 일조, 조망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이를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 •「전기통신사업법」제69조의2 및「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혐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혐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혐의하였습니다.
-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이동통신설비 설치 예정 위치 : 옥외안테나 설치위치 : 해당없음 중계장치 설치위치 : 지하2층 103동 PIT, 지하2층 105동 PIT
- 단지 내 각종 인입(상 하, 오수, 도시가스, 전기 등)계획은 인 허가과정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 단지 내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지역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위치, 개소 등 세부계획은 관련기관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 천장 내부가 기계설비 및 선기설비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외부의 인접대지 레벨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단지 경계부에 설치되는 경사면/계단/램프/옹벽 등은 종류 및 위치, 노출범위(높이,길이), 형태, 마감사양, 디자인 등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인 허가 도서에 준해 설치되며, 해당 천장고 초과차량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지하1층(주차 출입구 2.7m 이상/주차면 2.1m이상), 지하2층(주차 출입구 2.3m/주차면 2.1m이상)
- 단지 내 보안 및 안전관리를 위한 CCTV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옥외보안등 및 지하, 지상층 CCTV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기능과 감시 범위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기계/전기실 등은 실 시공 시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습니다. 기계실, 전기실, 지하주차장 등의 급배기용 DA가 지상에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시설과 인접한 세대는 미관저해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력공급을 위해 필수 기반시설인 한전 공급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한전패드 위치 등 부지제공 계약의 승계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으며, 설치 위치, 장소, 면적, 수량 등은 한국전력공사 혐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상에 설치되는 시설물(옥상장식물, 조명탑, 태양광집광판, 설비시설물 등)의 위치,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옥상, 동 출입구, 부대시설, 조경 구간, 기타 단차구간 등 단지 내 설치되는 난간의 형태, 높이, 재질, 색상 등은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램프 진출입로에 설치되는 출차경광등은 최소 50dB이상의 경보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설계관련 유의사항

-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아래 사항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1. 하기 사항에 따라 일조·조망·사생활 침해, 소음·빛공해·분진·냄새·진동 발생 등 환경권을 침해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 제연휀룸 / 주방 배기 등에 인접한 세대의 소음, 냄새, 진동 발생 및 돌출물/시설물(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태양집광판, 피뢰침 등) 등으로 인한 일조, 빛공해, 조망간섭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 E/V 우행에 따른 인접 침실 소음. 진동 등 발생으로 인한 환경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2. 일부동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되는 창의 크기 개폐여부 및 방식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3. 주차장 진입을 위한 램프의 마감재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4. 단지 내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설비관련시설 등의 위치 및 면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면적이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5. 계약세대가 속한 동의 위치, 층, 향에 따라 일조량에 차이가 날 수 있고, 일부 세대는 하루 종일 일조가 되지 않는 영구음영 세대가 생길 수 있는 점을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6. 아파트 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각 동별, 세대별로 주차위치를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으며, 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 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7. 일부 아파트 지붕 및 지상 일부구간에 태양광 집광판, 경관조명, 공청TV안테나,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중계기 등이 설치될 수 있고 상세계획(설치면적, 위치, 높이,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 최종 확정되며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8. 세대 외 공용부에 설치되는 전기, 통신관련 시설물은 사업승인도서에 준하여 시공되며, 통신 단자함/전기분전반은 사용성 개선을 위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9. 아파트 최상층 및 지하주차장, 지상 일부구간에 이동통신 중계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0. 주차장 및 각 동 옥탑, 지상 일부구간에는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중계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 11. 전기(스위치, 콘센트, 월패드, 분전반, 통신단자함 등) 설비마감재 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2. 본 건물 옥상에는 태양광 발전설비 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기기 작동 시 하부 세대에 소음, 냄새, 그을음, 진동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시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13. 기계/전기실 등은 실 시공 시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안하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습니다.
- 14. 차량출입구 통행 개선을 위하여 차단기가 추가/삭제/위치이동 될 수 있으며, 이로인해 도로 또는 보행로 폭이 확대 또는 축소될 수 있습니다.
- 15. 가로등, 야간 조명, 단지 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과 인접세대 소음, 빛공해, 인접주동디자인에 의한 눈부심, 사생활권 침해될 수 있습니다.
- 16. 전기/통신 맨홀 등 인입 장비의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서 최종 확정되며 관련 사업자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7. 견본주택에 전시되는 모형 및 이미지(조감도 등)상 표현된 단지명 및 BI는 실 시공 시 현장 상황 및 인·허가 기관의 심의·협의에 따라 위치, 개소수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으며 조명설계에 따라 일부 세대에서는 야간에 눈부심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8. 내화성능시험이 요구되는 공종의 경우 인증표시는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임한 감리가 승인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입주 후 임의해체 및 부속물(디지털도어록/말발굽 등)의 임의설치/교체에 따른 성능시험 결과는 시공사가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 19. 각종 기계설비 덕트배관 및 전기 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 공간 및 피트층을 공동 사용하며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됩니다.
- 20. 스마트폰 자동 주차위치 저장 시스템은 세대별 등록된 차량을 지상 및 지하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 21. 스마트폰 인증으로 공동현관 자동문 출입이 가능한 스마트폰 키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으며, 보조 출입키(카드형 RF키) 는 세대당 2개가 지급 됩니다.
- 22. 스마트폰 키 시스템은 스마트폰의 Bluetooth 기능이 활성화 되어 있어야 하며, 일부 스마트폰 기기에서는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23. 실 시공시 연돌효과 저감을 위한 방안으로 공용부 창호의 설치 위치, 개소, 크기, 높이, 사양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4. 단지 특성상 이삿짐 차량은 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없고, 사다리 차량을 이용할 수 없어, 지상에 주차한 후 엘리베이터로 이삿짐을 운반하여야 하니, 반드시 이를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진행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25.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 비상차로는 외부 도로와 바로 연결되고 진출입부(보행자출입구)에 이동식 볼라드가 설치될 수 있으며, 소방차, 통학차량 및 기타 서비스 차량의 이용 시, 별도의 출입 관리가 필요합니다.
- 26. 전력공급을 위해 필수 기반시설인 한전 공급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한전패드 위치 등 부지제공 계약의 승계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으며, 설치 위치, 장소, 면적, 수량 등은 한국전력공사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7. 단지내 한전패드 스위치가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 장소, 면적, 수량 등은 관련기관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디자인

- 1. 분양 시 홍보물에 사용된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2. 각 면적별 분양되는 단위세대의 마감재의 색상 및 제품은 차이가 있으므로 필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 선홈통은 발코니, 실외기실 또는 PD내에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4. 전기(스위치, 콘센트, 월패드 등) 설비마감재 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5. 모든 배선기구, 조명기구의 위치 및 수량, 재질, 문양(디자인) 등은 현장 여건 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6.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을 기본으로 하며, 수전이 설치되지 않은 발코니에도 배수설비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이는 시공상 하자가 아니므로 하자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7. 발코니에는 상부 배수배관이 천장내 설치될 수 있으며, 배수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8.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9. 본 공사시 천장틀의 종류 및 규격은 천장구성 및 마감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예정이므로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11. 주방가구 및 고정형 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의 간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12. 세대 내부 실시공 시「건축법 시행규칙」[별표5] 건축허용오차(제20조 관련)내의 시공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견본주택과 다소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이는 시공상 하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13. 세대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나 결로현상은 입주자의 관리상의 문제이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시공 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 14. 실외기실 갤러리(루버) 창 프레임 및 갤러리 등은 금속성 재질로서 외기에 직접 면하므로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하자가 아니며 입주자가 관리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15. 실외기실 갤러리(루버) 창 프레임 및 갤러리의 색상은 외부 색채 디자인에 따라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16. 계약자는 입주 후 세대 내 포세린타일 표면의 물기를 즉시 제거해야 하며, 물기로 인하여 미끄러울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17. 공용부위의 타일 표면에 물기 발생시 미끄러울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18. 입주 후 세대 내 환기가 부족할 경우 내/외부의 온도차이 및 습기로 인하여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결로에 의한 곰팡이 발생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키셔야 하며 특히 입주 후 첫해 겨울은 환기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욕실 샤워기 및 다량의 온수 사용 시 욕실 환기를 하셔야 하며, 욕실 환기 미비, 거실, 주방 등에 과도한 가습기 사용이나 음식물 조리 및 다량의 화분(실내 또는 발코니)은 결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므로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시기 바라며 환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9. 단열공사 외 환기불량, 사용상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로에 대해서 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 20. 계약자는 세대 각 실 및 발코니 외부 창호에 무리하게 힘을 가하거나 전입, 전출, 이사 시 이삿짐 장비가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야하고, 가급적 이삿짐 등은 해당동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21. 외부 창호는 층수, 향에 의한 바람의 영향차이로 인해 유리의 강도 및 두께가 달라질 수 있으며, 바람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견본주택에 제시된 형태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22.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와 위치는 견본주택 기준으로 시공되며 경우에 따라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3. 건본주택은 기준층 세대로 꾸며져 있으며 층별, 라인별로 천장고 및 출입구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건본주택을 방문하여 해당 평면도를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24. 저층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형태 및 크기 등 이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5. 외부 입면계획에 따라 장식물 등이 세대 외벽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26. 공사 진행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고, 추후 본 주택의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의 판단 기준은 사용승인도면에 따르며, 계약자는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 27. 창호 및 문의 열림 방향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8. 주차장에서 주차 후 엘리베이터 홀까지 동선이 다소 길어 이용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 29. 발코니에 설치되는 창호는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사양이 실시공시 인·허가 협의완료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30.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31. 일부동 하부에 필로티가 설치될 계획(일부 또는 전체)이며 시공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32. 단지 내 지하시설물 및 근린생활시설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 33. 본 공사시공 시 자재특성, 품질, 미관 향상, 마감시공 방식 차이에 따라 견본주택 시공방식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34. 욕실은 바닥난방이 설치되며(양변기/세면기 하부, 샤워부스 내부 및 욕조 하부 제외) 난방범위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35. 욕실 천장에 급수를 위한 분배기 및 상부층 배수배관이 설치 됨에 따라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구가 천장에 설치됩니다.
- 36. 아파트 외부 창호는 내풍압 구조 검토에 따라 세대별, 층수 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방향, 날개 벽체 및 분할시공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37. 가스배관 및 계량기가 발코니에 설치되며, 위치는 타입별 상이할 수 있습니다.
- 38. 세대 내부에 세대분전함 및 세대단자함이 개별(또는 통합)으로 설치되며, 위치 및 형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39. 발코니, 욕실, 현관 등은 바닥 단차설계가 적용되며, 출입문 개폐 시 신발 걸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40. 발코니 외벽, 측벽, 세대간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축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 각 부위별 확장여부(상하좌우)에 따라 단열재 설치로 인한 벽체 돌출 및 실사용 면적 이 강소될 수 있습니다
- 41. 단위세대 창호 프레임 색상은 위치 층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42. 확장세대의 발코니 중 외기에 면하는 일부 벽체는 결로방지용 단열재가 설치되어 실제 발코니 사용면적이 축소될 수 있으며 벽면 및 천장에 단열 설치로 인한 단차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43. 각 세대별 옵션형 평면 선택 유/무에 따라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수량 등은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44. 실내습도 및 사용자의 생활 환경이나 습관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창 표면 등 창호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합니다.
- 45. 발코니 확장 계약자의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의에 의거 계약함을 확인합니다.
- 46. 계약자가 임의로 전유세대 인테리어 공사 등을 수행하여 하자 또는 성능불량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체에게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등 일체의 요구를 할 수 없으며,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 1.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추가선택옵션 등에 따라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될 수 있으니,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2. 견본주택에 설치된 보조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소품 등은 세대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 공사 제외 품목입니다.
- 3.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특허권 등 부득이한 경우 및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이유로, 본 공사 및 하자보수 시 동등수준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계약자"의 개별적인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 4.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 스피커의 개수 및 위치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로 본 시공 시 각 단위세대 타입별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그 설치 위치가 결정됩니다.
- 5. 견본주택에 설치된 시스템에어컨은 옵션 상품이며 방문객을 위한 냉난방경용 에어컨입니다. 본 시공시 냉방전용 시스템 에어컨이 시공됩니다.
- 6. 난방은 개별난방 방식으로 보일러가 제공되며, 가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7. 견본주택에 설치된 환기구의 크기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실내 환기성능을 고려하여 위치 및 개소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8. 마감재의 사양은 주택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차이점을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합니다.
- 9. 견본주택에 설치된 수전류, 욕실 마감자재(양변기, 세면기, 휴지걸이, 수건걸이 등), 욕실FAN 등의 위치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 타일 및 천연가공석의 줄눈나누기, 마감 등을 고려하여 월패드, 세대단자함, 세대분전함, 배선기구, 보일러 온도조절기 등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1. 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타일류, 천연가공석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단차, 코너, 마감재접합부, 패턴 등은 실시공시 견본주택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12. 단위세대의 마감재 종류 및 두께에 따라 내부공간이 협소하거나 안목치수가 도면 및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치되는 가구의 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13. 주방에 가스배관, 렌지후드 환기덕트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일부 가구의 깊이가 줄어들 수 있으며,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14. 스마트 주방거치대가 설치될 경우 후면에 전원 및 통신단자용 통합콘센트가 주방 타일면에 노출 설치되며, 전원선 및 통신케이블이 노출 됩니다.
- 15.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치되는 가구의 사이즈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16. 가전 기기 등 설치 공간의 크기는 견본주택과 같으며 그 보다 큰 가전 기기는 해당 공간에 설치될 수 없습니다. 또한, 비치하는 냉장고 크기에 따라 주방쪽으로 냉장고 일부가 돌출될 수 있습니다.
- 17. 침실, 욕실 등의 벽체 두께 변경에 따라 문틀의 폭(벽체 두께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8. 아파트 특성상 세대 내 가구배치, 평면배치, 기타 품목 시공위치는 입주자 개인별 변경 요청을 할 수 없으며, 변경 필요 시 준공 및 시설물 인수인계 후 입주자 개인이 직접 시행하여야 합니다.
- 19. 유상옵션품목(가구, 가전 등)은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20. 각 세대별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1. 본 공사시 코킹 시공 부위 및 색상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공사시 욕실 천장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2. 주방장, 침실 반침장, 침실1 붙박이장, 신발장, 욕실장,거울 등 설치되는 가구의 비노출면(후면, 하부, 천장)에는 마루, 타일, 도배, 천연가공석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23. 욕실 거울의 경우 보호페인트가 입혀졌더라도, 자재특성(은 성분)상 산성, 알카리성 세제와 쉽게 화학반응하며, 습기에 의해 변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바 욕실 환기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하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합니다.
- 24. 견본주택에 연출되어 있는 스포트라이트, 스탠드 조명 및 팬던트는 전시용으로 실시공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25. 욕실 벽, 바닥 타일의 줄눈 위치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줄눈 및 타일 사이즈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6. 각 주택형별 유, 무상옵션 항목 및 확장공사 포함 항목은 평면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27. 세대 내부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침실내부로 물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됩니다.
- 28. 단위세대의 내부 단차부위(발코니, 욕실, 현관)는 변경될 수 있으며, 출입문 개폐 시 신발 걸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9. 주방에 가스배관, 렌지후드 환기덕트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가구의 깊이가 줄어들 수 있으며,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30. 설비 배관상의 이유로 커튼박스 크기는 타입별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31. 본 공사 커튼박스 시공 시 간섭부분의 가구사이즈가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평면선택제 및 설비배관에 따라 커튼박스의 길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32 욕실, 주방벽 타일, 거실 및 일부 복도 아트월 세라믹타일, 바닥 포세린타일의 나누기 및 패턴은 본 공사 시 다를 수 있습니다.
- 33. 본 공사 시 거실 및 일부 복도 아트월 세라믹타일의 패턴은 상/하부 북매치 또는 균일하게 패턴이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34. 픽쳐레일의 위치, 길이 및 사양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세대타입 별 상이할 수 있으며 옵션에 따라 일부 길이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35. 본 공사 시 슬라이딩도어의 프레임 및 주변 마감 디테일이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36. 본 공사 시 시스템선반의 사양, 길이, 폭,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37. 본 공사시 타일, 인조대리석, 천연가공석, 엔지니어드스톤(거실 벽, 주방 벽, 욕실 벽/바닥, 현관/발코니 바닥 등)의 패턴 및 결(베인)은 규칙적이지 않고 랜덤하게 시공되며 색상, 줄눈 나누기 및 간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38. 우물천장과 걸레받이는 본 시공시 하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PVC위 래핑 또는 도장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견본주택의 시공자재와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39. 각 세대 현관문 및 실외기실도어, 그릴의 도장, 색상 및 디자인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40. 견본주택 및 분양 홍보물에 표기된 유/무상 여부의 기준은 기본확장형 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 41. 철제방화문(현관문 하향식피난구 출입문 등)은 본 공사시 하부씰 상하좌우 프레임 형상 및 재질이 변경됩니다.
- 42. 세대 내 우물천장은 천장내 설비배관 등에 의하여 천장고 및 길이, 크기, 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커튼박스 길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43. 본 공사시 시스템가구 적용 부위 및 내부 구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44. 전열교환 환기장비가 실외기실/발코니 등 천정에 노출 설치되며 위치는 변경될 수 있고 작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
- 45. 화재시 대피하는 방식이 세대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필히 사전에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46.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옥외탈출형 대피시설 및 하향식피난구가 설치되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가 필요하며, 본 공사시 사양, 제조사, 바닥 및 벽체 마감, 레벨, 하부 턱 및 배수구 설치여부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47. 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타일류, 천연가공석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단차, 코너, 마감재접합부, 패턴 등은 실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48. 주방가구 및 붙박이가구의 후면 및 바닥, 벽체 등은 마감재 시공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49. 대형평형 온수분배기 2개소로 주방씽크장 하부에는 온수분배기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씽크장 하부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납이 제한됩니다.
- 50. 본 공사시 각종 도어 및 창호류의 사양(유리사양, 창틀 디자인, 손잡이, 창호크기, 루버형태, 재질, 색상, 제조사, 열림방향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51. 주방 상판 이음 부분이 노출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이음 부분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52. 단위세대 타입별 주방내부 구성 및 하드웨어, 악세사리 일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53. 비상대피동선으로 견본주택 창호의 유리를 일부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본공사 시 유리가 설치됩니다.)
- 54. 욕실 내 벽체 및 바닥 타일나누기는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며, 타일의 색상 및 패턴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55. 커튼박스 위치 및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견본주택에 미설치된 커튼박스 관련 본공사 시 실제 적용되는 커튼박스 부위는 계약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 56. 목창호(일부 실 제외)에 손끼임 방지 장치가 설치될 예정이며, 상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57. 욕실 문턱 높이는 물넘침 방지가 목적이며, 욕실화의 높이와 관계가 없습니다.
- 58. 설치되는 가구의 비노출면(후면, 하부, 천장)에는 마루, 타일, 도배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59. 침실, 욕실 등의 벽체 두께 변경에 따라 문틀의 폭(벽체 두께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60. 불박이장, 신발장, 욕실장 등 설치되는 가구의 비노출면(후면, 바닥, 천장)에는 마루, 타일, 도배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으며, 주방가구의 경우 후면, 천장에는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으나 바닥에는 페인트로 마감됩니다
- 61. 욕실장 및 욕실거울 측면,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62. 일부 단위세대의 경우 대칭형으로 계획되어 침실, 거실, 주방 등의 향, 조망, 창호의 개폐방향 등이 서로 다를 수 있으니 계약전 해당세대의 향, 조망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63. 일부세대의 경우 측벽 단열재 설치 여부에 따라 동일타입의 실외기실, 발코니 내부폭이 서로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64. 실외기실은 내부에 물건 등을 적치할 수 없으며, 물건 적치시 에어컨 효율 저하 및 결로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65. 본 공사시 실외기실 그릴창의 제조사, 재질, 사양, 크기, 디자인, 색상, 열림방향, 고정방식, 설치위치, 하부씰 디테일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66. 본 공사시 중문 등 유리 도어(슬라이딩, 여닫이, 픽스)는 각종 디테일(유리 벽체 및 도어, 프레임, 레일, 유리 등) 의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67. 본 공사시 타일(욕실 바닥 및 벽체, 현관 바닥, 아트월 등) 및 세라믹타일(거실 아트월 벽체, 주방 상판/벽체)의 패턴 및 결(베인)은 규칙적이지 않고 랜덤하게 시공되며 색상, 줄눈 나누기 및 간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68. 각 주택형에 따라 가구, 도어 구성 및 크기 등이 상이하오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69. 하이오티(카투홈 서비스 내용 포함) 서비스는 현대건설 특화 시스템이며, 아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하이오티 서비스의 경우 이동통신사/포털사/제휴사의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해당 업체 정책에 따라 사용요금 및 사용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하이오티 가전기기 제어서비스는 하이오티 연동된 IoT가전기기를 구매하고 세대 내 무선인터넷 환경이 구축된 경우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기 제조사의 정책에 따라 사용제한 및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서비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ㆍ하이오티 서비스는 성능 개선이나 입주 시의 기술개발 환경 등의 사유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후 플랫폼 운영사의 정책에 따라 사용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카투홈 서비스는 현대/기아차 19년이후 생산 모델 중 카투홈 기능이 있는 차량으로 해당차량의 커넥티드서비스(블루링크, UVO,제네시스)에 가입된 경우에 한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서비스는 제조사의 운영 및 요금정책에 따라 기능 및 비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제조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70. 세라믹타일 주방 상판 및 벽체은 이음매 간격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벌어질 수 있습니다.
- 71. 주방 상부장 위쪽으로 가스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72. 보조주방(다용도실) 수전위치는 실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73. 실외기실 상부에 설치되는 환기설비는 전열교환설비장치로 설치되며, 실외기실 그릴창 상부의 타공개소는 2개소로 시공됩니다.
- 74. 현관중문 시공 시 신발장가구 구성 및 주변 마감 디테일이 변경됩니다.
- 75. 대피공간 없이 발코니에 하향식 피난구(관계법령에 따라 화재 등 긴급 피난시 상부세대에서 하부세대로 하향식 피난구가 개방되고, 사다리가 내려와서 아래 세대로 피난이 되는 구조)의 경우, 층수에 따라 바닥 및 천장의 피난구 위치가 상이하며, 덮개(COVER)가 바닥마감에서 돌출되어 설치됩니다.
- 76. 환기장비에는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HEPA필터가 설치되며, 필터는 연1~2회 교체를 권장합니다. 사용정도에 따라 교체 주기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77. 주방가구 내부에 콘센트가 설치되는 경우, 해당 가구장 내 수납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전원선이 노출됩니다.

- 78. 세대내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장소별 색온도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79. 세대별 세대단자함 내부에는 별도의 허브장치가 지원되지 않으며, 해당 장치는 인터넷 설치 시 각 기간사업자에게 제공 요청하여야 합니다.
- 80. 세대 내 마감 상황(타일 및 천연가공석의 줄눈나누기, 도배와 가구 설치내용 등)과 제품의 품질수준 유지를 고려하여 월패드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81. 각 세대 내에 세대분전함, 세대단자함이 개별형 혹은 통합형으로 설치되며, 시공과정에서 위치 및 마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82. 견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은 세대의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는 디자인, 사양, 갯수, 설치위치 등이 건립세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83. 아파트의 현장여건, 구조, 성능, 및 상품개선 등의 사유로 조명기구, 월패드, 분전함, 콘센트, 소방설비 및 배선기구류 등이 동등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84. 침실, 거실, 주방의 조명스위치는 이동, 취침준비 등을 고려하여 마지막 소등되는 회로가 몇 초간 지연 후 소등되는 조명스위치가 설치됩니다.
- 85. 등기구 보강은 "원형 매입등 ω800. 사각 매입등 800*800" 규격 이상에만 해당됩니다.
- 86. 각 주택형에 따라 적용 품목(가구, 가전, 등기구, 스위치 등)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수량 등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87. 단위세대 발코니 및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노출배관(천장, 벽)은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88.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그릴의 형태는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89. 하향식 피난구는 비상시 사용을 위하여 항시 문을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피난시설로 인해 층간소음 및 방범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인·허가상 불가피한 사항이므로 시공자가 책임지지 않고, 또한 피난시설을 통해 소음 및 누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90. 실시공시 단위세대 내부에 결로방지를 위하여 일부 천장 및 벽체에 단열재 설치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발코니 내부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91. 발코니(일부) 또는 실외기실 공간에 환기시스템(장비) 및 환기시스템 배관이 설치되며, 설치에 따른 배관노출, 건축입면 및 내부마감(창호, 외부그릴, 전등 사이즈 및 위치,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92. 홈네트워크 설비 및 대기전력 차단 시스템유지 등에 따라 미 입주시에도 일부 전기사용량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분전반 차단시 홈네트워크설비, 방범 및 경보 알람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 93. 방에 설치되는 전열기구(콘센트, 스위치 등)위치 및 수량은 본 공사시 주방 가구, 주방 가구 악세서리 및 가스배관 설치 위치에 따라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94. 공사시 제품개발에 따라 기능이나 디자인, 색상, 설치위치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동등수준의 다른 제품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95. 본주택 세대 내 설치된 CCTV는 견본주택 보안용으로 본 공사시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96. 방스마트거치대의 전원은 해당기기 후면에 설치된 콘센트를 사용합니다.
- 97. 대내 마감 상황(타일 및 천연가공석의 줄눈나누기, 도배와 가구 설치내용 등)과 제품의 품질수준 유지를 고려하여 월패드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0. 션 선택 유/무 및 사용성 개선에 따라 온도조절기 및 조명스위치는 통합형 또는 분리형으로 적용 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101 주방 거치대는 주방 가구 유상옵션에 따라 설치되는 가구장 매립 조명과 간섭될 수 있으며, 이를 피하기 위하여 설치형태가 변경 될 수 있으니 계약전 명확히 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 102 주방 상부장 하부의 간접조명은 가스배관, 가스차단기, 자동식 소화기 제어기 등의 설치로 분절, 축소 될 수 있습니다.
- 103. 세대 거실 및 일부세대 침실 등의 분할형 이중창호에 설치된 중간바는 이삿짐 운반시 사다리차량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야 하며, 이를 어기고, 사다리차량을 이용하다가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은 입주자에 있으나 이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104. 층간바닥구조의 재질, 두께, 사양, 제품 등 세부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5. 각 동평면의 구조에 따라 일부세대는 피난방향을 고려하여 단위세대 평면도상 현관문의 열림방향과 상이하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 106.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7. 단위 세대 내 세대분전함, 세대단자함, 세대통합분전함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 월패드 및 배선기구류의 제품사양, 설치방향, 개소, 디자인 및 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8. 각 세대별 발코니 확장/비확장 선택 및 옵션형 평면 선택 유/무에 따라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9. 주방에 설치되는 배선기구(콘센트 및 스위치 등)는 본 공사시 가스배관, 가구장, 악세서리 등 평형 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 수량이 견본주택과 상이 할 수 있으며 평형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기 바랍니다.

■ 세대/규격

- _1. 분양시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실내투시도(색상, 구획선), 단지배치도, 면적 및 도면내용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 세대내 거실의 아트월 설치, 복도, 침실, 주방 등의 벽체마감(마감두께 등)으로 인하여 본 아파트의 인·허가 도면보다 안목치수가 줄어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자는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 3. 계약자 선택사항에 따라 세대 내부의 마감재 및 가구에 대한 마감치수(두께, 폭, 넓이)가 설계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설계도면에 미표기될 수 있습니다.)
- 4.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정한 감리자'가 성능시험 등을 통하여 품질 또는 성능 확인 후 현장 시공에 적합하다고 승인하여 설치한 자재 또는 제품에 대하여, 시공자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시공한 경우 설치(시공) 당시부터 성능미달의 제품을 설치하였다거나 시공 및 설치상의 하자가 있었음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 이후에 성능 미달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공자에게 품질 또는 성능미달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이 경우 입주 이후 '수분양자(입주자)'의 사용에 따른 자재 또는 제품의 성능저하 발생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유지 보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성능미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합니다.
- 5. 전항의 경우 입주 이후 '수분양자(입주자)'의 사용에 따른 자재 또는 제품의 성능저하 발생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유지 보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성능미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책임지셔야 합니다.

■ 제공/전시품목

-1. 분양시 홍보물 및 실내투시도에 표시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내·외부창호는 본 공사시 제조사, 사양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생활가구류(침대, 소파, 책상, 의자 등), 생활가전류(냉장고, TV, 밥솥, 전자레인지 등), 침장 및 커튼류, 인테리어

소품류(사진, 액자, 화분, 전시용벽체 등)는 연출용 전시품입니다.

- 2.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든 모형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3. 견본주택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및 감지기와 벽체에 설치된 경보기 등은 견본주택 자체의 소방시설입니다.
- 4. 모형 및 조감도에 표현된 각 주거동 외벽의 리브(줄눈)형태 및 지붕모양, 형태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주거동 저층부 및 고층부 등에 표현된 장식물의 형태는 실제 시공 시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 5. 공급주택의 실내 마감자재 중 미표기 사항 등 홈페이지에 포함되지 않은 설계내용은 사업계획승인 도면에 따라 시공됩니다.
- 6. 홍보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 주변시설(학교, 도로망 등)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및 시행/허가관청, 지방자치단체, 국가시책 및 개별 소유주의 이용 용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7. 견본주택에는 84A,114평형 및 타입이 설치 되어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그 밖의 평형 및 타입은 단위세대 모형 또는 이미지를 참고 바라며, 계약전에 평면 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등 견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 바랍니다
- 8.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견본 주택 건립세대에 한함, 그 외 타입은 이미지 제공)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견본주택상의 전시 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환경권

- 1.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의 사생활권의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2.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 및 조경(식재,시설물)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며, 인접동에 의해서 조망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3. 단지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문주, 식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인접한 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해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4.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부대복리시설 출입구 등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5.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주차장 램프 포함), 보행자에 의한 사생활권 및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6. 본 단지는 아파트,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계획된 복합시설로서 아파트의 지하주차구획은 타시설과 구분이 되어 있으며 지하1층~지하2층에 위치합니다. 지하2층은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이며 또한 각 동별, 세대별로 주차위치를 지정하여 주 차할 수 없고, 주동주출입구에서 거리가 먼 곳에 주차하여 이용할 수 있을 수 있으며, 각 동별 인접한 주차대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차, 여성전용, 장애인용, 확장형 주차대수, 일반 주차대수 등의 분포는 일부 동에 편중될 수 있으며,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 7. 저층부는 세대별로 가로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8. 엘리베이터에 면한 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상층 근접 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 기계실의 기계작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위치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9. 인접동 및 인접세대의 배치 등에 따라 세대별로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필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0. 단지 내 인접한 도로 및 주변시설 등으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1. 단지 내 계획된 부대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주민공동시설 등)로 인해 인근 해당 동 및 세대에 소음이 발생하거나 생활환경이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2. 근린생활시설 인접되어 있는 동의 저층세대는 해당 시설의 이용으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3. 단지 내외부 표고차이 및 주변시설 및 아파트로 인해 일부 세대의 경우 조망 기타 생활환경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4. 주차장 내부에 위치한 설비관련실(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팬룸실 등)로 인해 인근 해당 동 및 세대에 소음이 발생하거나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5. 주차장 출입구와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소음. 배기가스 및 조명에 의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6. 단지 내 지상 1층에 쓰레기집적소가 위치하여 수거차량 상시 접근에 따른 교통 통행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음 및 진동, 냄새, 해충, 미관저하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바랍니다.
- 17. 지하 쓰레기 집적소은 환기설비 등이 설치예정이며, 소음 및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치 등을 필히 확인 후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 18. 동별, 세대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침해가 발생되는 세대가 일부 존재하며 수분양자는 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19. 전기/통신, 맨홀 등 인입 장비의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서 최종 확정되며 관련 사업자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환경디자인

- _1. 외부 시설물(문주, DA, 쓰레기집적소, 실외기 설치공간 등)의 위치, 색채, 재질, 디자인은 본 공사시 관계기관의 협의 및 디자인개선 등의 이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 분양시 홍보물의 내용 중 교통 / 교육시설 / 주변 환경에 대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발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추후 이에 대한 일부 영향이 발생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3. 단지 모형의 조경 및 식재, 주변 환경, 부지 고저차, 주거동 외관 디자인(외벽의 줄눈, 리브형태, 지붕모양, 입면마감재료, 색채, 측벽, 옥탑장식물, 몰딩, 창틀모양 등), 부대복리시설의 색상 및 형태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 4. 단지 보행출입구, 차량 진출입로는 기존 도로의 선형 경사도에 따라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5. 대지면적은 확정측량에 따라 면적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6. 주민공동시설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실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시 재질, 색채, 가구 및 집기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7. 아파트 저층부 외벽마감은 특화 디자인 계획에 따라 시공하며, 위치, 색채, 재질, 디자인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8.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9.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10. 단지 내 조경 시설 및 식재의 종류, 수량 식재위치는 인허가청의 요청 혹은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한 설계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1. 외부 마감재 사양은 현장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 현장 마감재 사양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기현장과 비교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12. 저층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형태 및 크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3 단지 출입구의 문주는 형태 및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4. 동별, 층별, 라인별로 외부마감재료와 색상 및 외부창호 색상과 디테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변환경

- 1 투지이용계획은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 분양시 홍보물의 내용 중 교통 / 교육시설 / 주변 환경에 대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발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추후 이에 대한 일부 영향이 발생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3. 인근학교 학생배치와 관련하여 초등학교는 도봉초등학교 배치 가능, 중학생은 강서중학교군 내 중학교로 분산 배치 가능, 고등학생은 경상북도단일학교군으로 분산 배치 가능합니다.
- 4. 당해 지구 내 교육시설 등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학생수용여건 변화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고, 학생배치계획은 향후 아파트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 초등학교:054-440-2228 / 중학교:054-440-2324)

■ 부대복리시설

- 1. 분양시 홍보물, 모형, 이미지 등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공집기는 실제 시공시 재질, 색상,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시설의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3.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관련 시설은 입주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4.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 5. 홈페이지에 표현된 커뮤니티시설(주민운동시설 등) 내부에 표현된 시설물, 냉난방기기, 집기류(기기 및 비품 등)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별도로 제공되지 않으며, 주민부대복리시설에는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및 품목만 시공하므로 기타 시설, 기기 및 비품은 입주 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설치 및 운영, 유지, 보수, 관리하여야 합니다.(실제 시공될 시스템 등 설치품목은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비교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 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6. 주민공동시설은 입주민이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만을 제공하며, 지층의 특성상 전자기기, 목재류 등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습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 설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7. 경로당,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 관리사무실, 지하주차장, 경비실 등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 시설물은 동선, 성능개선 및 대관 인·허가를 통하여 실시공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 및 통합, 사용자 동선,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 형태 모양),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103동 B1F), 작은도서관(101동 B1F), 경로당(101동 B1F), 어린이집(101동 1F), 관리사무소(103동 B1F)

■ 입주 및 등기, 면적정산

- 1.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2.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구 개별 통보합니다.
- 3. 상기 세대 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키로 합니다.(단, 대지면적은 각 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 친환경주택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 개수(필요시)
	단열 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 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건축부문 설계기준(제1호)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 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 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 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8조 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기계보다 서계기조/제3호》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8조 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조건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제2호)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최소소비효율기준 만족 제품(0.7kW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 송풍기용 제외)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효율의 1.12배 이상 제품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 설치되는 수전류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 각 실별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고효율 변압기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 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 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거실, 침실, 주방에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 공용화장실에 설치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조명설치(다목)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조명설치(다목) 적용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구 분	회사명	감리금액(부가세 포함)	ยอ
건축 감리	㈜나우씨엠건축사무소	₩2,826,832,800	
전기 감리	㈜이린	₩490,843,210	
정보통신 감리	㈜서광이에프	₩297,000,000	
소방 감리	㈜신화에프이씨	₩94,790,000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 모든조항은 주택분양보증약관(개정 2021.09.24)을 준용하며, 일부조항은 생략되었습니다.
- ※ 미확보부지가 있는 경우 공사로 사업주체 변경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주택분양보증약관에 따른 보증기관 및 보증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증서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제01282024-101-0007400호	177,630,050,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아파트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관리형토지신탁 관련 사항

- 본 공급은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씨엔비네트웍스, 시행수탁자 한국투자부동산신탁㈜ 및 시공사 현대건설㈜, 대출금융기관인 우선수익자간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 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실질적 사업주체는 ㈜씨엔비네트웍스이며,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본 공급계약에서 시행수탁자 한국투자부동산신탁㈜는 분양 물건에 대한 분양공급자(매도인)의 지위에 있으나, 본 건 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업무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의 한도내에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본 공급계약으로 인한 매도인으로서 일체의 의무와 책임은 실질적 사업주체인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씨엔비네트웍스가 부담합니다.
- 본 공급물건은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사업에 의거 공급되는 물건이며, 신탁해지 또는 신탁목적 달성 등의 사유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즉시 모든 공급계약에 대하여, 개별 공급계약에 따라 해당 매수인에게 본 공급물건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즉시 해당 공급계약에 대하여, 공급자이자 매도인으로서 수탁자 한국투자부동산신탁㈜가 가지는 일체의 권리와 의무(매도인의 담보책임과 기타 손해배상의무를 포함하되, 이에 한하지 아니함)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위탁자인 ㈜씨엔비네트웍스에게 면책적 포괄적으로 이전(승계)됩니다.
- 분양계약자는 본 분양물건이 토지신탁사업에 의거하여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하자보수와 관련된 모든 책임이 실질적 사업주체인 시행위탁자 ㈜씨엔비네트웍스와 시공사인 현대건설㈜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 상환, 기타사업비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급계약서 내용 외 한국투자부동산신탁㈜가 당사자로서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수분양자와의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본 공급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규정된 시행수탁자 한국투자부동산신탁㈜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도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본 관리형토지신탁 내용은 본 공고 모든 내용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표시사항

• 등록업자 : 한국투자부동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7층 (대치동, 섬유센터)

• 사업방식 : 관리형토지신탁

• 소유권 이전형태 : 잔금 완납시 개별등기

• 부동산 개발업 등록번호 : 서울190082

• 구미시(2022 - 공동주택과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3)

■ 사업관계자

구 분	시행위탁자	사업주체(매도인 겸 시행수탁자)	시공회사
상 호	㈜씨엔비네트웍스	한국투자부동산신탁㈜	현대건설㈜
주 소	경상북도 구미시 야은로11길 27, 2층(봉곡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섬유센터 7층(대치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계동, 현대빌딩)
법인등록번호	176011-0142543	110111-7125720	110111-0007909

■ 홈페이지 https://hillstate.co.kr/s/gumi

■ 견본주택 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원평동 1071-8

■ 분양문의: 054-453-1011

※ 본 견본주택은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하며,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